인권말살제국—미국

평 양 출 판 사
주체103(2014)년

오늘 미국이 벌리고있는 《인권》소동으로 하여 세상은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사실상 행성의 최악의 인권불모지이며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감히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인권》문제를 걸어 시비질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미국이 당치않게도 국제사회에서 《인권재판관》몽둥이를 휘둘러댈수록 그것을 반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의 공식기구들과 비정부기구들, 여러 정당, 단체들과 전문가들, 언론들이 앞을 다투어 인권말살을 생리로 하는 미국사회의 인권유린실태를 폭로단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본사는 최근 로씨야외무성웹싸이트에 실린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와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 웹싸이트에 실린 《2013년 미국인권기록》을 책자로 묶어 출판한다.

차 례

1. 미국인권보장실태보고서

【로씨야외무성웹싸이트】

머 리 말

미국에서의 인권보장실태는 국제공동체와 미국의 비정부기구, 대중보도수단들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본 보고서에는 권위있는 국제 및 국가기구들의 검증된 정보들에 기초하여 인권분야에서 미국사회가 직면하고있는 수많은 체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실자료들이 정리되여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첨예한 도전들가운데는 우심해지고있는 사회적불평등, 인종, 민족, 종교적징표에 따르는 차별, 유죄판결도 없이 감금자들을 무기한 억류하고있는 사실, 재판의 편견, 법적공간밖에 있는 감옥들, 고문행위, 재판과정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영향력행사, 취약한 참회제도, 언론의 자유구속, 인터네트검열, 합법화된 부정부패행위, 공민들의 선거권제한, 인종 및 민족별에 따르는 학대, 아동권리유린, 다른 나라들에서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미국법의 치외법권적적용, 이단자들에 대한 박해, 평화적시위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 미성년들과 정신병환자들에 대한 사형언도 등이 속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법적의무는 의연 통제체계를 예견하는 9개의 기본인권조약중 3개(온갖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65년,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 1966년, 고문반대협약 1984년)에만 귀착되여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경제, 사회,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법 1966년, 온갖 형태의 녀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년,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년, 모든 근로이민들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1990년, 불구자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6년,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2006년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러한 실태는 민주주의가치관을 수호하는데서 세계지도자의 역할을 놀려는 미국의 의도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며 미국당국이 이중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므로 인도주의 및 인권분야에서의 심중한 현존문제들을 미국의 국제적의무에 맞게 해결하도록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의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가입실태

미국의 국제법적의무는 의연 구속력이 있는 9개의 기본인권조약중 3개(온갖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65년,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 1966년, 고문반대협약

1984년)에만 귀착되여있다.

유엔의 공식기관들의 정보에 의하면 미국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국제문건들은 다음과 같다.

1. 강제 혹은 의무로동에 대한 협약 제29호(1930년 6월 28일)
2. 결사의 자유와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1948년 7월 9일)
3. 반인신매매 및 제3자에 의한 매춘업 유엔협약(1949년 12월 2일)
4. 동등한 가치의 로동을 하는 남자들과 녀자들에게 동등한 보수를 주는것과 관련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100호(1951년 6월 29일)
5. 로동 및 취업분야에서의 차별과 관련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111호(1958년 6월 25일)
6. 교육분야에서의 차별을 반대할데 관한 유엔협약(1960년 12월 14일)
7. 경제, 사회, 문화권리에 관한 국제법(1966년 12월 16일)
8.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선택의정서(1966년 12월 16일)
9.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을데

대한 유엔협약(1968년 11월 26일)

10. 최소로동나이에 관한 국제로동기구협약 제138호 (1973년 6월 26일)
11. 녀성들에 대한 각종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유엔협약 (1979년 12월 18일)
12. 어린이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1989년 11월 20일)
13. 사형폐지를 위한 공민 및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법의 두번째 선택의정서(1989년 12월 15일)
14. 근로이민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유엔협약(1990년 12월 18일)
15. 녀성들에 대한 각종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의 선택의정서(1999년 10월 6일)
16. 불구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2006년 12월 13일)
17.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2006년 12월 20일)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학대의 표현

(미국에서는 인종주의, 배타주의기운이 우심해지고있는 위험한 경향이 있다. 미국의 법기관들은 극단주의그루빠들

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반감에 의해 감행된 범죄건수가 매우 많다고 지적하고있다.)

비정부기구 싸우던 포버티 로 쎈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 신나치스(《민족동맹》, 《민족사회주의운동》, 《민족사회주의선봉대》 등), 인종주의, 분립주의단체들을 포함하여 극단주의그루빠가 1 000여개나 된다. 2000년부터 이러저러한 주민그루빠에 대한 증오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결합한 단체들의 수가 69% 늘어났다.

엄한 헌법틀거리들은 미국에서 신파쑈급진주의자들에 대한 재판상문책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있다. 이자들이 피고석에 앉는다 해도 언제나 다른 죄목으로 기소되군 한다.

미련방수사국이 2009년초에 진행한 《각성높은 독수리》작전과정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나라의 우익급진주의그루빠들이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고 위협편지를 배포하며 무기를 매매하기 위해 맹렬히 활약하였다.

련방수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총체적으로 미국에서 증오때문에 감행된 범죄건수가운데서 80%이상이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증오감에 의한것이다. 또한 인종증오에 기초한 범죄가운데서 거의 70%의 경우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 희생물로 되고있다.

미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배척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2011년 3월 미상원사법위원회 청문회들에서 울려나온 자료들에 의하면 이슬람교신봉자들은 미국주민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적차별 총 건수의 14%가 그들을 대상으로 한것이다.

인권옹호활동가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슬람교음모》론을 선전하는 단체들이 30여개나 된다. 미국진보쎈터의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사영기금과 일부 군수회사들에서 자금을 보장받고있다. 이 단체들의 예산은 약 5 000만US$에 달한다고 한다.

사회학자들은 미국주민의 15~20%가 로골적인 외국인배타주의자들에 속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대략 그만한 수의 미국인들이 이슬람교신봉자들이 정부에서 일하는것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간주하고있다.

2010년에 비방중상반대동맹은 전국적으로 유태인배척사건을 1 200여건이나 등록(뉴욕 한곳에서만도 133건)하였다. 실례로 2011년 11월 대체로 유태인정통파들이 살고있는 구획이 정체불명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악당들은 여러대의 자동차를 불태우고 주택의 담벽과 공원의자들에 파시즘의 상징과 3케이단의 표식을 가득 그려놓았다.

《월가를 점령하라》운동참가자들도 반유태인구호를 여러번 사용하였다.

2011년에 발표된 비방중상반대동맹의 연구자료에 의

하면 미국인의 15%정도(약 3 500만명)가 급진주의적인 유태인배척견해를 가지고있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오클라호마씨티에서의 폭발을 비롯하여 한때 미국내에서 련쇄테로행위를 도발한 반정부적인 《애국주의》운동이 적극적으로 자라나고있다. 싸우던 포버티 로 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사업한 첫 3년동안에 《애국주의》그루빠들의 수가 2011년에 1 200여개에 달하였다.

경찰의 과도한 힘의 사용과 인종차별

(미국비정부기구들이 계산한데 의하면 대체로 경찰 100명중 1명이 범죄적인 직권람용에 관여하고있다. 성폭행, 부화방탕한 행위, 미성년 등에 대한 경찰의 강간행위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경찰의 비법행위가 사망을 초래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약 30%의 경찰만이 저지른 행위로 하여, 재판을 받는다. 경찰의 과도한 힘의 사용과 관련한 신소가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항의운동가들로부터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2009년 1월 미국출판물 《이머전시 메디신 저널》(Emergency Medicine Journal)은 구급치료실 의사들의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315명의 의사가 여론조사에 참가

하였는데 거의 모든 응답자들(98%)이 자기들이 치료하는 기간에 1회이상 경찰의 전횡의 희생물로 된 환자들을 접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통보하였다.

비정부기구인 경찰의 직권람용통계 및 통보계획(National Police Misconduct Statistics and Reporing Project)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만도 경찰의 직권람용건수가 5 000여건이나 등록되였다. 대략 경찰 100명당 1명이 범죄적인 직권람용을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경찰들가운데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하여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률은 전국적으로 볼 때 훨씬 낮다. 경찰의 약 30%만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범죄때문에 재판을 받고있다. 상기 비정부기구가 대중보도수단 등의 공개된 정보자료들을 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용된 지표들은 축소되였다고 볼 수 있다.

성적인 성격을 띠는 각종 위법행위(성폭행, 부화방탕행위, 강간 등)가 정상적인 일로 되였다. 공개된 소식통들이 가지고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실례로 2010년에 618명의 경찰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것이 폭로되였는데 그중 180건의 경우 미성년들이 폭행의 대상으로 되였다. 인권옹호활동가들은 경찰들의 성범죄행위건수가 미국의 전반적인 주민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말하고있다.

비정부기구 국제대사령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2년 2월까지 미국에서 적어도 500명이 체포되였거나 감금되였을 때 경찰이 전기충격무기를 사용한것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쓸수 있는 전기충격무기와 기타 소음무기사용규칙이 자주 위반되고있다. 국제대사령이 2008년에 발표한 보고서 《미합중국: 법집행기관들에서의 전기충격무기사용》(《USA: Stun Weapons in Law enforcement》)에 의하면 전기충격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90%가 적수공권이였다. 더우기 그들중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무기가 여러번 사용되였다.

실례로 2001년에 캘리포니아경찰이 도로운행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멈춰세운 43살 난 에이. 케파트가 죽었다. 그를 해부한 결과 전기충격무기로 그에게 16번이나 충격을 주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그러나 3명의 경찰중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1년 11월에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듣지 못한 귀가 먼 61살 난 아르. 앤토니가 전기충격무기로 인해 사망하였다.

2012년 10월에 오클랜드시당국은 2000년에 마약구매혐의로 체포된지 1개월후 죽은 제이. 아마로의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는것을 승인하였다. 체포과정에 경찰들은 이 라틴아메리카계주민의 갈비뼈 5개를 꺾고 왼쪽페를 크게

손상시켰다. 오랜 기간 오클랜드경찰은 사건을 교묘하게 덮어두고있었다. 해부를 진행한 법의감정원은 제이. 아마로의 가족에게 그가 길거리에서 마약매매업자들과 싸움을 하다가 죽었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미련방수사국 요원들이 진행한 조사결과 바로 경찰이 이 젊은이에게 타박상을 안겨 죽게 만들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경찰들의 지나친 직권람용에 대한 신소는 사회적불평등을 반대하는 《월가를 점령하라》운동참가자들속에서도 나왔다. 2011년 10월에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 경찰들이 24살 난 이라크전쟁참가자 에스. 올쎈의 머리를 때렸는데 결과 그는 한동안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였다. 2011년 11월에 시애틀의 경찰은 84살 난 디. 레이니목사, 19살 난 임신부를 포함한 시위자들을 향해, 캘리포니아대학을 지키던 경찰들은 대학구내에서 평화적으로 집회를 연 대학생들에게 최루성가스를 사용하였다.

《월가를 점령하라》운동참가자들의 진영은 뉴욕과 보스톤, 덴버, 볼티모어, 쌘프랜씨스코, 로스안젤스, 필라델피아, 워싱톤 등 미국의 도시들에서 강제로 해산되였다. 결과 이 도시의 재판소들로 경찰의 지나친 직권람용에 대한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였다.

미국경찰들은 인종차별에 체계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실례로 소수인종이 주민의 절반정도를 이루는 뉴욕에서 그

들은 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검열단속의 80%를 받고있다. 또한 85%의 경우 아프리카계미국인과 에스빠냐어사용주민들이 수색과 증명서검열을 당하고있다. 경찰이 백인을 멈춰세우는 경우 8%만이 수색을 당한다.

이민정책, 인신매매

(미국에서는 해마다 약 40만명의 이주민과 인신매매에 걸린 사람들이 각이한 시기에 감금되고있다. 현재 450만명의 미국어린이들이 미국에서 비법적인 처지에 있다. 이것은 비법이주민어린이 100만명은 셈에 넣지 않은것이다. 이주민들이 하루 16~24시간씩 장기로동을 강요당하는 현상도 있다. 돈을 벌러 미국에 오는 이주민들은 자주 성폭행을 당하고있다. 특히 인권옹호활동가들의 불안을 자아내는 것은 미국에 비법적으로 들어와있으려 하는 이주민들속에서 사망자수가 매우 많은것이다.)

미국의 이민정책은 국제인권옹호활동가들의 타당한 비난을 받고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인신매매에 걸린 사람들과 피난처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이주민 거의 40만명이 각이한 시기에 감금되고있다. 흔히 그들은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억류된 사람들이 형기를 치르는 조건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한심한 조건에서 억류되고있

다. 2008년 9월에 미행정부가 채택한 비법이주민들의 최저구금기준들은 의무적인 성격을 띠지 않으며 결과 체계적으로 위반되고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이민기관들에서는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2년 3월 캘리포니아의 한 이민감옥에서는 강제추방될 위험속에서 페염을 앓다가 필요한 의료상방조를 받지 못한 에프. 도밍게스가 죽었다. 공식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이러한 기관들에서 이런 사망자가 나타나기는 2011년 10월이래 여섯번째였다.

이민감옥들에서 성폭행이 빈번히 벌어지고있다. 미국민자유동맹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감금자들로부터 강간과 기타 성폭행과 관련한 200여건의 공식신소가 제기되였다.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비법이주민수가 최근에 연 40만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미당국이 상습적인 범죄자들을 우선적으로 강제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표방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소소한 위법행위를 하다가 탄로된 외국인들이 추방되고있다. 추방위협을 당하는 외국인들중 많은 사람들이 적합한 법적방조를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얻지 못하고있다. 루이지아나, 미씨시피, 텍사스와 같은 주들에서는 이민감옥에 있는 510명의 감금자당 겨우 1명에게 해당법분야를 전공하는 변호사가 차례진다.

대부분의 경우 추방되는 사람이 얼마나 오래동안 국내에서 살았는가 하는것(퓨연구쎈터에 의하면 비법이주민의 거의 3분의 2가 미국에서 10여년을 살았으며 35%는 15년이상이나 살았다.)도 그에게 미국인가족이 있는가 하는것(많은 사람들에게 미국국적 혹은 영구거주권을 가지고있는 남편 혹은 안해와 아이들이 있다.)도 고려하지 않고있다. 현재 적어도 량부모중 한명이 미국에서 비법적인 처지에 놓여있는 미국어린이는 450만명이다. 또한 100만명의 어린이가 미국에서 비법적으로 살고있다.

강제추방건수가 기록적인 지표에 이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히꼬와 린접한 주들의 당국들은 비법이주민들에 대한 련방당국의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있다. 2010년 4월 23일부터 아리조나주에서는 비법이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법이 가동하고있는데 그에 따라 경찰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해당 인물이 미국에 비법적으로 체류하고있다는 타당한 의혹이 생기는 경우 증명서를 요구하고 체포할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많은 대도시들에서 이런 현상은 우선 비법이주민들이 형사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과 협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지되여있다. 이 정책에는 경제적리면도 있는바 《이주민도시》들의 경제가 비법이주민들의 값눅은 로동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때문이다.

《휴먼 라이츠 워치》가 얼마전에 발표한 보고서 《살길이 없다:알라바마주의 이민법》(《No Way to Live: Alabama's Immigrant Law》)에 의하면 알라바마주에서 시행되고있는 이와 류사한 법에 의하여 법보호기관들뿐아니라 일반주민들속에서 인종차별과 이주민들에 대한 직권람용이 우심해졌다. 또한 알라바마주의 법은 학생들의 이민지위를 검열할 의무를 지우고 비법이주민들에 대한 공공봉사제공, 그들의 소송검토, 부동산세금징수 등 주당국과 그들사이의 임의의 《실무적인 계약》도 금지하고있다.

2012년 8월에 발표된 이민연구쎈터(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보고서에 의하면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20여년을 미국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모든 재산지표들을 놓고볼 때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인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2010년에 4 000만명의 이주민(비법이주민이든 합법적인 이주민이든)과 그 자식들의 23%가 빈궁선이하에서 살고있었고 36%는 적어도 한건의 사회지원계획에 의존하였으며 29%는 의료보험증을 가지지 못하고 13%는 다부세대살림집에서 살고있었다.

미국의 농업부문에서 이주민들은 전체 취업자들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들은 자주 착취를 당하고있다. 또한 비법이주민들뿐아니라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의 로동권리가 유린되고있다. 비정부기구 싸우던 포버티

로 쎈터가 지적한데 의하면 H-2A부류 사증에 따라 련방로동이주계획에 참가하기 위해 외국로동자들은 흔히 저들의 《모집자들》에게 막대한 납부금을 바치고 결국은 빚단련을 받고있다. 미국에 오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사증을 수속해준 고용주의 착취대상이 되여도 고용주를 바꿀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동시에 그들은 빚을 물 돈을 다 모을 때까지 나라에서 나갈수 없다.

2012년 6월에 소매업체 월마트는 루이지아나해산물가공회사에서 가장 가혹한 착취를 받았다고 한 8명의 메히꼬로동자들의 청원서를 국가이민로동자동맹(National Guestworker Alliance)이 발표하자마자 추문때문에 상품납입자들중의 하나인 이 회사와의 계약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특히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들을 회사공장에 가두어넣고 하루 16～24시간씩(1주일에 80시간) 일을 시키고 최저로임을 주었다. 그후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미국로동성은 월마트망의 공급회사 18개중 12개에 로동법위반행위에 관한 도합 622건의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돈을 벌러 오는 이주민들은 자주 성폭행을 당하고있다. 2008년에 비정부기구 싸우던 포버티 로 쎈터가 미국의 5개 남부주들에서 일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온 200여명의 로동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였

다. 응답자의 거의 4분의 3이 직장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2011년에 《휴먼 라이츠 워치》가 류사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단체의 보고서 《공포를 조성하여》(《Cultivating Fear》)는 8개 주의 농민, 농장주, 인권옹호단체직원, 법률가, 기타 전문가 등 160명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수한 정보에 기초한것이다. 여론조사에 참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업부문에 종사한 이주민로동자들에 대한 성폭행을 가장 첨예한 문제로 꼽았다. 조사에 참가한 모든 외국녀성로동자들은 자기자신이든 자기 동료이든 지난 시기 성폭행의 희생물로 되였다고 밝혔다.

미사법성의 자료에 의하면 강간과 성폭행의 희생물로 된 녀성의 약 40%만이 자기들이 당한 불행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고있다. 공식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녀성 5명당 1명이 1회이상 성폭행을 당하였다. 특히 미국에 비법적으로 들어가려 하는 이민들속에서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것이 인권옹호활동가들의 특별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국경통제가 심하기때문에 그들중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미국-메히꼬국경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통해 침투하려 하고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데 의하면 해마다 아리조나사막에서 탈수와 과도체온으로 하여 150~500명이 죽고있다. 2005년에는 국경경비대원들이 이러한 사건을 492건 등록하였다. 비정부기구 국제대사령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5 300명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가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2011년에 《더는 목숨을 잃지 말아야 한다》(No More Deaths)단체는 보고서 《잔인성의 문화》를 발표하여 미국국경경비대원들이 비법이주민들을 매우 위험하고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들에로 의도적으로 내몰아 그들이 목숨을 잃을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고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을 포함한 비법이주민들을 억류하였을 때에는 그들에게 물도, 먹을것도, 의료방조도 주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억류된 사람들의 10%가 육체적폭행을 당하고있다. 이주민들은 또한 비위생적이고 너무나 비좁은 장소에 억류하며 증명서를 포함한 사품들을 회수하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가족들을 의도적으로 갈라놓는데 대하여 하소연하고있다.

경제적 및 사회적권리

(미국에는 1 280만명의 실업자가 있으며 4 000만명은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 14.5%의 세대가 식료품부족난을 겪고있다. 미국에서는 원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으며 경제분야에서의 차별이 농후하다. 미국에서 로조가입 및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로동자들의 권리보호체계는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가운데서 가장 취약하다. 최근 10년간 미국

은 국제로동기구의 어느 한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주로 대기업과 각이한 리권그룹들에 유익한 원외운동실천이 광범히 전파되였는바 전문가들은 이것이 본질상 합법적인 부정부패형태로서 경제, 사회, 정치생활분야들에서의 수많은 위기현상들에 대처할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고 간주하고있다.)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는 미국에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보장상황에 커다란 부정적영향을 미쳤다. 최신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실업자수는 1 280만명이다. 그중 520만명은 반년이상이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였다.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4 600만명의 미국인(주민의 15.1%)이 년수입이 빈궁선이하인 가정들에서 살고있었다.

현재 거의 5 000만명의 미국인(주민의 16.3%)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였다. 미행정부는 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에 의료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인권옹호단체들은 공민들이 보험계약을 구매하는것을 의무화한것은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보고있다.

비정부기구 민주주의협조연구소는 미국에 존재하고있는 보건체계가 보험회사와 은행, 제약회사, 과학연구쎈터, 의료기관들을 통합한 기업모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의 일반공민들이 손해를 보고있다.

미농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가정의 14.5%가 식료품부족을 느끼고있으며 그중 5.4%는 굶다싶이 살고있다. 390만세대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지 못하고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수입의 불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이 국제기구가 연구를 진행하고있는 34개 국가들중 이 지표에서 미국을 앞서고있는 나라는 뛰르끼예와 메히꼬, 칠레뿐이다.

통계회사 쎈티어 리써치(Sentier Research)가 분석한데 의하면 2008년-2010년에 주민의 64%를 이루는 백인미국인이 모든 수입의 76%를 얻은 반면에 주민의 각각 13%와 16%를 이루는 아프리카계미국인과 라틴아메리카계미국인들이 차지하는 몫은 수입의 8%, 9%였다. 퓨연구쎈터의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기기간에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 자산은 53% 줄어들었다.

수많은 연구자료들은 백인미국인과 아프리카계미국인들사이의 신용평가에서의 차이가 계속 벌어져 사실상 경제적 인종차별을 초래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심지어 경제가 안정된 2003년에조차 신용평가를 높이 받은 아프리카계미국인이 4분의 1미만에 불과한 반면에 백인주민들속에서 이 지표는 65%였다.

인종적불평등은 주택소유수준에서도 표현되고있는바 백인미국인들속에서 거의 4분의 3이 자기 집을 가지고있다면 아프리카계미국인들중에는 그런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미국에는 인종차별요소가 의연 남아있다. 실례로 아프리카계미국인의 20%가 아직까지 흑인거주지역에서 살고있다.

미국주민의 1.7%를 이루는 원주민들(520만명) 특히 강제이주지역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약 70만명)의 생활이 매우 렬악한 상태에 있다. 그들중 거의 3분의 1이 공식적인 빈궁선이하의 수입을 얻고있으며 강제이주지역들에서의 실업률은 50%, 일부 지역들에서는 80%이상이다. 인디안가정의 년간수입은 총체적으로 일반미국인가정수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사우스 다코타주의 알렌지역(주민의 96.4%가 인디안이다.)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서 주민의 96%가 빈궁선이하에서 살고있다.

25살이상 인디안의 77%만이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3%만이 학사학위증서를 가지고있다.(전반적인 주민들속에서 이 지표는 각각 86%, 28%이다.)

인디안의 46%정도가 자기 집을 가지고있지 못하며 5명당 1명은 수도, 전기, 하수도가 없는 집에서 살고있다. 인디안들속에서 알콜중독, 심장질병, 결핵, 당뇨병을 앓는 사

람들이 불균형적으로 매우 많지만 그중 거의 30%가 의료보험에 들지 못한 상태이다.

비정부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가 진행한 여론조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11개 주의 농업근로자들속에서 인권이 심히 침해당하고있다.

상황이 가장 한심한 지역은 남부주들(캘리포니아, 텍사스, 아리조나)이다. 공식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미국의 농업근로자 200만명(농사가 잘된 해들에는 300만명이상)중 72%가 외국인들로서 기본은 메히꼬인들이다. 로동력의 절반은 거간군들의 도움으로 돈을 벌려 미국에 온 비법이주민들(캘리포니아에서 그 지표는 90%까지 증가되였다.)이다.

로동력암시장들에서 사회적보호를 제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녀성들로서 미국의 전체 로동력의 4분의 1에 달한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직장에서 장시간 혹독한 로동을 하고있다.

미국에서 로조가입 및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로동자들의 권리보호체계는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가운데서 가장 취약하다. 또한 최근 10년간 미국은 국제로동기구의 어느 한 협약도 비준하지 않았다. 미국에는 고용주가 타협하기를 거절하는 경우 중재재판하는 효과적인 체계가 없다. 2011년 3월에 위스콘신주에서 단체계약체결에 관한 로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법이 채택되였다. 이와 류사한 법안을 콜로라도주, 인디아나주, 아이오와주, 미시간주, 뉴멕시코주, 오하이오주, 오클라호마주, 테네시주 등 도합 18개 주에서 작성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과 여러 리권그룹들이 국가정권기관들에서 저들에게 유리한 결정채택을 추진하게 하는 원외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개별적정치인들과 사회단체지도자들, 기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원외운동을 하는 회사들은 계속 성과를 올리고있다. 일정한 사람들이 자기생활의 각이한 시기에 국가관리로 되거나 정치인으로 선거되고 그 다음 원외운동회사들에 취직하는 이른바 《회전문》과 같은 현실의 결과 미국의 국가기관들과 원외활동가들사이에 공고한 련계가 맺어져 원외운동회사들과 그 고객들이 정치결정채택과정에 항시적으로 접근할수 있게 하고있다. 《워싱톤 포스트》는 이러한 《공존》의 뚜렷한 실례로 미국가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구성된 국회《특별위원회》와 미국의 주요회사들에서 일하는 원외활동가들사이의 호상관계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 원외운동체계가 사실상 합법적인 부정부패형태로서 선거되는 공무원들과 관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리익을 위해 직위를 리용하게 한다고 확언하고있다. 비정부기구 민주주의협조연구소는 이러한 부

정부패행위가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더욱 확대된 보통 뢰물행위와 구별되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치선거에 대한 미국공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견지에서 볼 때 《미국의 부정부패》의 위협성을 과소평가할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가 미국이 경제, 사회, 정치생활분야들의 수많은 위기에 대처할수 없게 하는 원인들중의 하나로 된다.

아동의 권리

(미국에서 수십만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고있으며 일부 경우 이것은 사망을 초래하고있다. 19개 주들에서 법이 육체적처벌적용을 승인하고있으며 그중 일부 지역들에서는 학생들의 7.5%가 이런 처벌을 받고있다. 미국에는 전기충격과 먹이지 않기, 암모니아수를 강제로 들이키게 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교육쎈터들이 있다. 로씨야에서 데리고 온 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3개 국가들중의 하나이다.)

미국보건후생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 이 나라에서 69만 5 000명의 어린이가 학대를 받았으며 그중 약 1 600명(그중 79%이상은 부모들에 의해)이 목숨을 잃었다.

죽은 어린이의 약 80%는 4살도 안된 어린이들이다. 총체적으로 결산기간에 약 590만명의 미성년들에게 폭행이 가해졌을수 있다는 약 330만건의 신소가 미국의 후원기관들에 들어왔다.

이에 있어서 가장 문제있는 주들과 지역들은 콜럼비아특별구(어린이 1 000명당 23.4건), 뉴욕(17.4건), 마사츄세쯔(17건), 켄터키(16.8건), 아이오와(16.8건), 아칸소(16.5건), 알라스카(15.4건)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가혹행위의 26.8%가 성행위(사실상 3분의 1) 등 폭행과 관련되여있다. 전체 피해자의 16%정도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어린이들이다.

주로 남부주를 비롯한 19개 주의 법에 따라 학교들에서 아직까지 육체적처벌이 승인되고있다. 미교육성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2006년에 22만 3 000명의 학생들에게 육체적고통이 가해졌다. 이 지표들에서 가장 앞선 지역은 미씨시피주(이 주에서는 전체 학생의 7.5%가 《교양》의 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 아칸소주(4.7%), 알라바마주이다.

또한 미국국립학교 학생들의 17%를 이루는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은 모든 육체적처벌의 36%를 받고있다. 《가정의 첫 방조》(Family First Aid)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미성년들의 약 30%가 자기의 동년배들로부터 《인신공격》

을 당하거나 그들자신이 《인신공격》에 참가하고있다.

2012년 여름 고문문제담당 유엔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스는 마사츄세쯔주의 어느 한 학교에서 《애를 먹이는》 어린이들에게 자폐증을 치료하는 전기충격무기를 사용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한것과 관련하여 미국정부에 문의하였다. 캔톤시의 로텐버그교육쎈터는 이른바 《혐오를 자아내는 료법》(전기충격을 가하는외에 먹을것을 빼앗고 때리며 암모니아수를 강제로 들이키게 하는 방법 등을 포함.)에 매달리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아동학교이다. 거기서 학생들은 하루 24시간동안 특수한 전기충격발진기를 지니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은 위생병들에 의해 원격조종된다.

2011년에 이 학교의 창설자인 엠. 이스라엘은 어느 한 학생이 77번이나 《전기충격치료》를 받은 장면을 찍은 록화필림을 없앨것을 지시하였다.

1975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한 감옥에서 전기충격무기로 직접 고문을 받은적이 있는 후안 멘데스는 미성년들에게 그토록 비인도주의적인 《치료》를 적용하고있는데 대해 경악을 표시하였다.

이미 40년간이나 존재하고있는 이 학교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변호사들의 봉사비용으로 1 600만US$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아직까지 폐쇄되지 않았다. 학교의 년간수입은 5 600만US$이고 학생 한명을 키우는데 학

교는 년간 22만US$를 받는다. 학교당국은 2002년에 7시간동안 31차의 전기충격고문을 당한 18살 난 에이. 맥콜린스의 어머니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규범들이 부모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의연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소말리아, 남부수단뿐이다.

미국은 자기의 국제적의무들(2002년부터 미국은 어린이들의 무장분쟁참가와 관련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서명국이다.)을 위반하고 테로분자들과 무장성원들과 련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미성년들을 몇년동안 재판없이 감금하고(지난 시기에는 가혹한 심문방법을 들이대군 하였다.)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02년이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따나모에 있는 미군감옥에서 생활한 미성년은 도합 2 500여명이다. 그들중 많은 미성년들이 석방된 후 힘들게 정상생활에로 돌아가고있다.

미국은 해외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데려다 양자로 키우고있다. 미국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미국에서 9 300명의 미성년이 양자로 되였다. 그러나 양자들을 잘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것은 이 분야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에서는 양자들

의 최소한의 권리보호도 담보하지 못하는 중개인들을 통해 어린이들을 계속 양자로 삼는 현상이 농후하다.

미국법은 부모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건수속이 없이 양부모들이 데려온 어린이들을 버리도록 미국인들을 도와주는 몬타나주의 《렌츠 포 키츠》와 같은 기관들의 활동을 전혀 조정하지 못하고있다.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이 기관에 로씨야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살고있으며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고있다. 그러나 아동권리담당 로씨야련방 대통령전권대표와 로씨야외무성이 각방으로 노력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1964년 쌍무령사협약을 위반하면서 각종 구실을 내대고 로씨야대표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령사접근하는것을 거절하고있다.

로씨야에서 온 양자들에 대한 폭행문제가 의연 첨예하게 제기되고있다.

2005년 8월 14일 로씨야에서 양자로 데려온 한살 반밖에 안된 일리야 까르긴쩨브가 죽었다. 그의 양아버지 브라이언 딕스트라가 어린이를 죽인 죄로 기소되였지만 후에 보석되였다. 2011년 11월에 브라이언 딕스트라는 터진 머리를 비롯하여 어린이의 몸에 상처가 난것을 계단에서 우연히 떨어졌기때문이라고 배심원들을 설복하여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로 인정되였다.

2011년 11월 18일 요크시(펜실바니아주)재판소는 2009년 8월에 로씨야에서 데려온 양아들 이완 스끄로보가또브를 죽인 죄(7살 난 그의 몸에서 약 80개소의 상처가 발견되였다.)로 기소된 크레이버부부에게 부당하게도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스끄로보가또브가 양부모들때문에 죽은것으로 하여 기소측이 가장 가혹한 처벌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크레이버부부는 재판정에서 석방되여 1년 반동안 연금되여있었다.

미국에서는 양딸로 삼았던 로씨야미성년 크쎄니야 안또노바를 강간한 죄로 기소된 엠. 그리스모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고있다. 피고를 보호할 목적으로 변호측은 위조문건들을 리용하는 등 각종 계책에 매여달리고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25년까지의 감옥생활로부터 종신감금형에 이르기까지의 형벌을 받을수 있는 엠. 그리스모의 변호사들은 오히려 소녀를 헐뜯으면서 벌어진 일이 마치도 께메로보의 유치원에서 얻은 《심리적인 질병》으로 인한듯이(일반적으로 재판에서는 범죄의 희생자의 질병이 가해자의 죄과를 더욱 무겁게 만드는 사정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꾸미려고 계속 획책하고있다.

2012년 5월 16일 월루오트구(위스콘신주)검찰소는 2004년에 로씨야에서 데려온 6명의 양자들에게 육체적고통을 주고 학대한 오브라이언부부를 기소하였다. 이 미국인부부

는 몇년동안 그들에 대한 처벌로 주기적인 구타, 질식, 최루성가스에 의한 중독과 같은 수법들을 적용하였다. 그들을 학대하는데 이 부부는 저들의 친아들들을 끌어들였다. 미성년들을 학대한 죄로 공식기소된 후 오브라이언부부는 보석되였다.

2012년 7월 18일 브리스토우시(버지니아주)에서 또 한건의 로씨야양자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의 희생물로 된 어린이는 8살 난 다니엘 쑤이니이다. 경찰이 초보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년이 여러번 구타를 당하였고 결과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법기관들은 양부모들인 어머니 에미 캐틀린 쑤이니와 아버지 메츄 존 쑤이니를 체포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두사람은 어린이를 학대하고 미성년이 부득이하게 법을 위반하게 만든(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밤에 어른의 동행이 없이 거리에 나와있는것을 금지하고있다.) 죄로 기소되였다. 그러나 후에 그들은 보석으로 놓여나왔다.

선 거 권

(미국에서는 선거구들에 접근할수 있는 규칙을 보다 강화하는 법문건들이 채택되고있다. 선거인단을 통한 현 선거체계는 일부 주 주민들의 선거표가 수학적으로 다른 주

주민들의 선거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580만여명의 미국인이 전과가 있다고 하여 선거권을 빼앗겼다. 미국인의 25%는 대통령선거때에 투표수계산을 위한 전자장치들의 도움으로 투표하고있다. 54%이상의 경우 투표자들은 《기계》가 자기들의 투표를 어떻게 등록하였는가를 모르고있다.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의 보도에 의하면 이 기구들은 손쉽게 먼거리조종을 당하고있다. 당소속과 인종적징표 등에 따라 선거자들이 투표자명단에서 제외되는것은 선거권침해의 대표적실례이다.)

2011년-2012년에 일련의 주들(텍사스, 위스콘신, 사우스캐롤라이나, 캔사스, 알라바마, 미씨시피, 로드아일랜드, 펜실바니아, 뉴햄프셔, 버지니아, 테네시, 플로리다)에서 선거구들에 접근할수 있는 규정을 더욱 강화한 법들이 채택되였다. 새 규범들에 따라 선거자들에게 주당국이 발급한 사진과 함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일데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예비투표기일을 축소하였으며 전과자들의 선거권을 더욱 제한하고 선거자들의 집단적인 등록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들었다. 새 법은 약 5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인권옹호활동가들은 새로 나온 이 법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 소수계층과 빈곤주민계층의 선거권을 극력 제한하려는 시도로 평하였다.

미국대통령은 아직까지 직접적인 전인민적선거에서가 아

니라 선거인단에 의해 선거된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 체계가 낡고 비민주주의적이라고 간주하고있다. 이런 선거제도하에서는 특히 델라웨어나 노스 다코타주민들의 선거표가 보다 큰 주들 실례로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선거자들의 선거표보다 수학적으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주선거인들의 수와 선거자수의 비률에 의해 규정된다.)한다.

현존체계에 의해 선거자들의 지지표를 경쟁자보다 적게 모은 후보가 미국대통령으로 선거된 사례는 미국력사상 3회(마지막으로 부쉬2세가 2000년에 그렇게 되였다.)이다.

미사법성 장관 에리크 홀더는 미국에서의 선거자등록체계를 《구식》으로 평하였다. 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대통령선거시 투표권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7 500만명의 주민들중 6 000만명이 시끄러운 절차들이 많아 등록을 하지 못하여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쎈텐싱 프로젝트단체에 의하면 580만여명의 미국인(모든 잠재적인 선거자의 2.5%)이 전과자인것으로 하여 선거권을 박탈당하였다. 또한 총체적으로 미국인 40명당 1명이 투표권을 빼앗겼다면 아프리카계미국인들속에서는 그 지표가 13명당 1명(총수의 7.7%)이며 켄터키, 버지니아, 플로리다와 같은 일부 주들에서는 20%이상의 흑인미국인이 선거

자명단에서 제명되였다.

형무소들에서 형을 치르고있는 사람들은 2개 주 즉 메인주와 버몬트주에서만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0개 주가 조건부적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35개 주가 조건부적으로 기한전에 석방된 사람들의 투표권을 거부하고있다. 11개 주들에서는 지어 형기를 완전히 치른 사람들까지도 선거권을 빼앗겼다. 따라서 알라바마, 플로리다, 켄터키, 미씨시피, 테네시, 버지니아에서는 7%이상의 성인주민이 투표권을 박탈당하였다.

콜럼비아특별구의 50만여명의 시민은 미국회량원에 표결권을 가진 자기의 권한있는 대표들을 아직까지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금을 지불할 의무를 걸머지고있다. 그들에게 그런 권리를 부여할데 대한 법안이 2009년에 또다시 상원과 하원에 제출되였지만 끝내 기각되였다. 이번기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12월에 워싱톤주민 티. 쿠퍼의 신소와 관련하여 아메리카인권위원회는 현 상황이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투표와 관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담보하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국선언 제2조와 제20조에 대한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2010년 1월 유럽안전협조기구 민주주의기구 및 인권문제국장 제이. 레나르치츠는 《련방선거위원회에 대한 〈씨티

젼스 유나이티드〉의 소송》과 관련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해당 판결에 의하면 영리 및 비영리단체들이 초기선거전 30일간과 일반선거전 60일동안에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해 《독자적인》(후보들과 당들과 합의를 보지 않은) 선거전보도를 전파하는데 자금을 지출하지 못하게 하는 련방법 조항들은 공민들과 그 련합체들인 법인들에게 언론과 견해의 자유를 담보하는 미국의 첫 헌법수정안에 배치된다.

제이. 레나르치츠는 해당 판결이 2개의 자유선거원칙 즉 선거자들이 후보들가운데서 어느 한명을 선택하도록 하고 희망자들은 선거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배치될수 있다고 간주하고있다. 민주주의기구 및 인권문제국 전문가들은 선거회사들에 자금을 지출하는 규칙을 더욱 강화할것을 미국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2010년의 판결은 반대로 막대한 자금지원이나 개인재원이 없는 후보들을 더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하고 나아가서 정치적다원주의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고있다.

무소속후보들이 선거에 참가하거나 선거조직의 직무를 맡는것을 금지하고 상원의원들이 기한전에 사임하는 경우 주지사로 임명하는 실태는 인권옹호활동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오바마가 미국대통령으로 선거된 후 결원된 일리노이주출신 상원의원자리를 사실상 매각하려고 한 이전

주지사 로드 블래고제비츠의 사건이 주목을 끌고있다.

미국대중보도수단들의 보도에 의하면 2012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선거자의 25%가 투표자에게 투표확인정보가 적힌 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직접기록전자장치의 방조하에 투표하였다고 한다. 이 전자장치는 외부에서 조작하기 매우 쉬운것으로 인정되였다. 실례로 아르곤느국립연구소(일리노이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학교 8학년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직접기록전자장치를 원격조종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제작할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지출은 26US$이다.

전자투표장치용용지에 내용을 적은 공민들의 근 54.5%는 전자장치가 투표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 일체 알지 못한다.

선거법의 기타 위반행위들가운데는 자료기지의 정확성에 대한 검열을 방해하고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조기투표결과를 비법적으로 인쇄하며 기록용지를 수정하거나 없애버리고 선거자들을 투표자명단에서(당소속과 인종적징표 등에 따라) 제명하며 투표의 비밀에 대한 헌법적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누가 어떻게 투표하였는가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관하는 현상이 있다.

언론과 대중보도수단들의 자유, 정부활동의 투명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2012년에 미국에서의 언론의 자유수준을 매우 낮은것으로 평가하였는바 이것은 주로 미국경찰이 미행정부에 불리한 항의시위들을 취재한 기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미국기자공동체는 대중보도수단분야의 법이 계속 강화되여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데 대해 우려하고있다. 미국에서 기자들이 《정치적으로 부당한》 발언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월가를 점령하라》운동을 취재한 기자들이 공격당한것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 《국경없는 기자들》은 2012년 1월에 년례적인 세계출판자유지수에서 미국의 순위를 단번에 27개 자리나 떨어뜨려 47위(워싱톤이 치외법권적인 사법권을 실시하는 지역들을 고려할 때 57위이다.)에 놓았다. 이 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항의운동취재시 경찰이 과도하게 힘을 사용한것으로 하여 80여명의 기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무소속법률가련맹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뉴욕에서만도 2011년 9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8명이상의 현지보도기자들이 체포되였다.

2012년 8월 4일 《뉴욕 타임스》 사진기자 아르. 스톨라리크는 《월가를 점령하라》운동의 또 한차례의 항의행동시 어린 소녀애를 체포하는것을 찍지 말데 대한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거부한것으로 하여 체포되였다. 또한 한 경찰은 기자에게서 사진기를 빼앗아 그것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2012년 11월에 기자는 《경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죄》로 법정에 나서야 하였다.

2012년 2월에는 채광업분야에서 모순적인 지층파렬방법의 리용에 관한 하원과학기술위원회 청문회를 록화촬영기로 찍으려고 시도한 기록영화제작자 제이. 폭스가 체포되였다. 그는 오스카상수상후보로 되였던 이 방법의 적용이 환경에 주는 위험성에 대한 기록영화 《가스랜드》를 만든 사람이다. 그후 국회경찰은 폭스에게 국회출입승인이 없었다고 하면서 《비법침입》죄로 그를 기소하였다. 앞서 립법자들은 NBC TV방송과 Fox TV방송이 이 청문회를 촬영하는것을 거절하였던것이다.

2010년 11월에 죠지아주 포트 베닝군사기지앞에서 진행된 집회를 취재하던중 《라샤 투데이》TV방송통로기자 케이. 포르쯔와 촬영기자 제이. 콘베이가 체포되였다. 승인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하고 당국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죄로 기소된 기자들은 억류된지 32시간후 290US$의 벌금을 물고 일정한 담보밑에 석방되였다.

최근 4년간 대중보도수단들에서의 비밀정보루출과 관련한 공개적인 형사소송건수가 기록을 깨뜨렸다. 특히 1917년 《간첩행위》에 관한 법위반죄로 망자료기지 《위킬릭스》에 정보를 제공한 병사 브래들리 매닝을 포함한 6명이 기소되였다. 브래들리 매닝은 2011년 4월 캔사스의 한 감옥에 이송되기 전에 독감방에서 침구용백포나 개인사품이 없이 살았으며 하루에 한번 45분간의 산보시간에만 감방에서 나갈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새벽에는 그가 자살하지 못하도록 옷과 안경을 모두 빼앗아가군 하였다.

빈 라덴을 죽인 불의의 기습을 포함한 미국의 비밀작전들과 이란핵계획에 대한 싸이버공격정보가 대중보도수단들에 련속 루출된 후 미국의 립법자들은 이 분야에서의 법을 강화할것을 약속하였다. 정보안전통제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비밀이 공개된 문건들이 9 200만건으로서 기록적으로 많은 지표에 이르렀다.

기자공동체는 2013년 첩보활동에 예산자금을 할당할데 대한 법안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거기에는 첩보기관요원들이 기자들에게 이러저러한 비밀정보를 몰래 혹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공하여 공개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한 조항이 들어있다. 그외에도 법안에는 당국이 대중보도수단대표들로부터 진술을 보다 헐하게 받아내게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여 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기자들은 자기들의 정보원천과 문건들(재판소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을 비밀로 보존할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련방법을 미국회가 채택할것이라고 기대하기를 단념하였다.

미국에서 기자들이 《정치적으로 부당한》 발언을 한것으로 하여 일자리를 떼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례로 2010년 6월 《자유의 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행위를 비판한 전설적인 헬렌 토마스가 유력한 유태계의 압력을 받고 은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2010년 7월에는 CNN TV방송회사 근동문제담당 상급편집원 나스르가 트위터에 레바논의 시아파 정신적지도자가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시한것으로 하여 해고되였다.

2011년에 전설적인 가수이며 제2차 세계대전 로병인 벤네트는 자기가 한 말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한 TV방송에 출연하여 2001년 9월 11일 공격이 근동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때문에 유발되였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는데 그것때문에 즉시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인터네트검열

(미행정부는 미국에서 인터네트망을 책임지고있는 회사들에 간접적인 압력을 가하고있다.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미국가기관들이 구글회사에만도 지난 결산기간보다 103% 더 많은 내용물삭제요구문건을 보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미특수기관들이 검열한 전자통보문은 3 000% 늘어났다.)

미국에서 인터네트를 통한 교류의 내용은 날이 갈에 따라 더욱더 국가와 사영회사들, 단체들의 검열을 받고있다. 또한 미국헌법에 대한 1차 수정안이 있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정사업에서는 우회방법들이 적용되고있다.

국회는 주로 국가예산분할분야에서의 자기의 법률제정특권을 리용하고있다. 2000년에 법 《인터네트상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할데 대하여》(Children Internet Protection Act-CIPA)가 채택되였는데 그에 따르면 학교들과 도서관들이 먼거리통신봉사를 받고 인터네트에 접속하는데서 련방적인 비용삭감조건으로 웨브려과기와 기타 웨브내용검열기술수단들을 도입하는것이 의무화되여있다.

미행정부는 직접적인 인터네트검열대신에 미국에서 웨브내용물을 책임지고있는 회사들에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고있다. 재판상문책으로 위협하면서 회사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웹싸이트에서 삭제하도록 부추기고있다.

구글접속과 관련한 이 회사의 최근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미국가기관들이 회사에 보내여온 내용물삭제요구문건들은 지난 결산기간에 비해 103%

늘어났다. 미국의 법보호기관들은 《비방중상이 담겨진》 1 400편의 록화편집물을 《유튜브》에서 삭제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6 300건의 요구서들은 1만 2 200여명의 사용자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의 93%가 집행되였다.

미당국은 또한 홈페지등록자들에게 미국의 제재법을 위반하는 외국웨싸이트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데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있다. 2008년에 미재무성의 지시에 의해 국가《검은명단》에 오른 꾸바에로 관광려행을 할것을 유럽인들에게 선전하던 약 80개의 인터네트싸이트들이 사전예고없이 페쇄되였다. 1917년 법 《적대국가들과의 무역에 대하여》(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의하여 미국인들은 이 나라들과 기업을 하는것이 승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플회사는 꾸바의 람술을 비롯하여 알콜을 판매하던 도이췰란드웨싸이트의 구좌를 동결하여야 하였고 구글회사는 꾸바의 콤퓨터들에서 자기의 부록들에 대한 접속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에 대해 《위험한》 견해를 표명하는 사람들에게 미행정부는 이민법을 적용하고있다. 2012년 1월 26살 난 아일랜드남성과 24살 난 한 영국녀성이 트위터에서 자기들이 《미국을 없애려》 한다(영국의 속어로 《없애다》는 《실컷 마시며 놀다.》는 뜻을 가지고있다.)는 롱담을 한것

때문에 미국입국을 거절당하였다. 로스안젤스시의 비행장에 도착한 후 그들은 면밀한 검사를 받고 5시간동안 심문을 당하였다. 그후 그들에게 수갑을 채워 비법이주민감옥에 보내여 12시간동안 감금한 후 추방하였다.

1994년 법 《통신회사들이 법보호기관들을 방조할데 대하여》에 대한 수정안에 의하면 콤퓨터회사들은 자기의 기술을 전자감시를 하는 특수기관들의 능력과 일치시켜야 한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에 이 법에 따라 미국특수기관들이 검열한 전자통보문의 건수는 3 000% 늘어났다.

현재 미국회가 검토하고있는 법안 《싸이버위협에 대한 첩보자료의 교류 및 보호에 대하여》는 개인들의 홈페지들을 감시할수 있는 미국정부의 능력을 사실상 제한하지 않고있다고 인권옹호활동가들은 간주하고있다.

인터네트사용자들과 인권옹호활동가들은 또한 국회의 검토단계에 있는 법안 《창조경제잠재력에 대한 실제적인 망위협과 지적소유권절도행위를 막을데 대하여》와 《온라인에서의 해킹을 막을데 대하여》에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일부 인권옹호활동가들은 이 법 발기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본질상 인터네트에 검열체계를 도입할것이라고 간주하고있다. 구글회사의 쉬미트회장은 이 법안들이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참화》로 된다고 간주하고있다. 2012년 1월에 《위

키피디아》는 항의의 표시로 《암흑》행동을 진행하여 웅근 하루동안이나 그에 대한 접속이 봉쇄되였다. 결국 법안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온라인항의행동으로 하여 국회는 그 채택을 일시 뒤로 미루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이 앞으로 채택되지 않을것이라는 담보는 없다고 인권옹호단체들과 인터네트사용자들은 간주하고있다.

인터네트에서 전통적인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는 견해를 표시하는 미국인들은 추방을 당하거나 지어는 자유를 박탈당할수 있다. 2010년 7월에 CNN TV방송회사 근동담당 상급편집원 나스르가 트위터에서 레바논의 시아파 정신적지도자가 사망하여 유감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한것으로 하여 해임되였다.

미행정부는 《위킬릭스》싸이트가 외교비밀문건을 공개한데 대한 보복으로 박해하였다. 《위킬릭스》싸이트에 대한 접속은 지구재판소의 판결과 일련의 상원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여러번 차단되군 하였다. 백악관과 국회도서관, 펜타곤, 국무성, 미국의 기타 기관들의 직원들은 《위킬릭스》싸이트에 들어가는것이 금지되여있다.

국가종교라지오방송련맹과 《미국권리 및 사법제도쎈터》의 공동연구자료에 의하면 애플, 구글, 야후, 페이스북, 마이스페이스와 같은 세계적인 인터네트회사들은 종교적성격의 정보를 전면적으로 려과하고있다.

극단주의와 조폭성과의 투쟁이라는 구실밑에 이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결과 신자들은 인터네트에 변태적인 성행위는 죄과로 된다는 자기의 견해를 발표하기가 매우 힘들다.

2011년 9월 《월가를 점령하라》운동 열성분자들은 자기들의 전자통보문들을 야후회사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적발한다는 구실밑에 고의적으로 봉쇄하였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선전공세의 목적으로 인터네트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영국신문 《가디언》의 자료에 의하면 미중앙군사령부는 근동과 중앙아시아 등 해외의 사회망들에서의 론쟁을 조작하기 위한 프로그람을 개발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Ntrepid》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과업은 있지도 않는 인터네트사용자들의 도움으로 친미적인 선전을 보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론평들을 봉쇄하는것이다.

사 형

(33개 주에서는 의연 사형이 승인되여 적용되고있다. 62명의 녀성을 포함한 3 100명이 자기들에게 언도된 사형판결의 집행을 기다리고있다. 1976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에서는 22명의 미성년을 사형하였다. 미국인권옹호활동가들이 평가한데 의하면 미국에서 모든 사형수들의 5~10%가

무서운 심리적고민으로 고통을 겪고있다. 사형판결을 내릴 때 인종차별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최고형은 아직까지 미국의 33개 주 법에 의해 허용되고 있다. 범죄자들에게 이 형벌이 적용되는 수준에 있어서 미국은 그들이 비난하는 나라들과 같다. 2011년에 미국에서는 43건의 사형이 집행(예멘에서는 41건)되였다. 사형을 집행하는 5가지 방법이 적용되고있는바 교수, 총살, 전기의자, 가스감방 그리고 공식당국들이 담보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결수들에게 고통을 주는 주사를 놓아 죽이는 방법(사형의 95%)이 있다. 미국에서의 모든 사형의 37%가 텍사스에서 집행(미국에서 1976년에 사형제도가 복구된이래 1 300명중 483명)되였다.

…

2012년 8월초 아메리카인권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최고형을 적용하는 지역국가들에 그 집행을 페지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2012년 8월 9일 펜실바니아주지사는 6살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7살과 18살에 무례하게 행동한 2명을 죽인 48살 난 아프리카계미국인 윌리암스를 2012년 10월에 사형할것을 지시하였다. 그의 변호사들은 윌리암스가 어릴때 어떤 일을 당해야 하였는가를 판결을 내린 배심원들이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그외에도 그들은 보다 경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피고가 면죄를 받을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012년 6월 29일 미국최고재판소는 그들의 판결을 재검토할데 대한 청원서를 기각하였다.

2011년 9월 죠지아주에서 42살 난 아프리카계미국인 데이비스(그는 9명의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경찰을 죽인 죄로 기소되였지만 후에 그중 7명이 자기의 증언을 수정하였다.)가 그의 죄가 의문시되기때문에 면죄를 받게 하려던 미국과 국제인권옹호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형되였다.

미국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수감자들의 수는 오늘날 3 100여명에 달하며 그중 62명이 녀성이다. 미국에서 유. 게. 미헬(2007년에 캘리포니아재판소에 의해 련속살인공모죄로 판결받음)과 웨. 웨. 바비체브(고의적인 살인죄로 기소) 등 2명의 로씨야공민도 사형을 당할수 있다.

2005년 미국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에 《로우퍼와 씨몬스》사건으로 미성년들을 사형(1976년이래 22번째)하였다. 미국에서는 앞서의 결정(2002년)을 위반하고 애트킨스와 버지니아사건으로 저능아들을 계속 사형(적어도 최근 5년간 7명)하고있다. 《멘탈 헬스 아메리카》단체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모든 사형수의 5~10%가 커다란 심리적고민으로 고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사형판결시 또 하나의 인종차별도 주목을 끌고있는바 살

인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이 아프리카계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77%의 경우 백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로 사형을 언도하고있다. 게다가 아프리카계미국인이 나라 주민의 거의 13%를 이루고있지만 《최고의 처벌조치》를 언도받는 사람들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하는 몫은 42%(사형된 사람들가운데서 35%)를 이루고있다. 1976년에 사형제가 복구된이래 백인들을 죽인 255명의 아프리카계미국인들에 한해 사형이 집행되였고 아프리카계미국인을 죽인것으로 하여 사형이 집행된 백인은 18명에 불과하다. 얼마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루이지아나주에서는 백인을 죽였을 때 사형판결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아프리카계미국인을 죽였을 때보다 97% 더 높다.

수감제도

(미국은 의연 세계적으로 수감자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미국수감자수의 60%이상이 인종 및 소수민족대표들이다. 종신감금형을 언도받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 2008년에만도 그 수는 6 800명의 미성년을 포함하여 14만 600명에 달하였다. 일부 주들에서는 수감자 20명당 1명이 완전히 고립된 독감방에 감금되여있다. 많은 감옥들에서는 지어 최소한의 수감생활기준도 준수되지 않고있다. 수감자

들에 대한 간수들의 폭행은 성적성격 등 정기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미국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감옥주민》이 가장 많은 나라(미사법성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2월 31일당시 미성년재판으로 감금된 약 7만명을 계산하지 않고라도 그 수는 226만명에 달하였다.)이며 인구 한사람당 죄수가 가장 많은(10만명당 732명) 나라이다. 미국성인 99명당 1명이 감옥에 들어가있다. 여기에 집행유예되였거나 조건부적으로 기한전에 석방된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교화기관들의 감시속에 있는 미국성인들의 수는 710만명으로서 주민수의 3%에 달한다.

캘리포니아에서만도 2012년 2월당시 14만 1 000명이 감옥에 수감되여있었는데 이것은 수용한계량(8만명)을 배나 초월한것이다. 주에서는 악명높은 《세번의 타격》규정이 적용되고있는바 그에 의하면 두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범죄자의 형기는 배로 불어나고 세번째일 때는 자동적으로 종신감금형이 차례진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 주에서는 8일에 1명이 적합한 의료방조를 받지 못해 죽고있다.

비정부기구 쎈텐싱 프로젝트에 의하면 련방감옥들과 주감옥들에서 종신감금형을 치르는 미국인들의 수는 1984년이래 4배 늘어나 2008년에 14만 600명에 달하였다. 그중 6 800명이 미성년때 감옥에 들어갔으며 4만 1 000명(29%)

은 사면권을 가지고있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수감자들의 로동을 착취하는 기업이 번창하고있다. 이 나라 수감자의 10분의 1이 영리적인 감옥에서 생활하고있다. 2010년에 2개의 사영감옥회사가 약 30억US$의 수익을 올렸다. 인권옹호활동가들과 미국감옥들에서 형기를 마친 사람들의 자료에 의하면 사영교화기관들은 대부분 최소한의 감금생활조건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감옥이 차고넘치는 주요원인이 최근 40년간 도처에서 형사법을 조목조목 부단히 가혹하게 한데 있다고 보고있다. 1960년대부터 법위반자들을 교화하는데로부터 점차적으로 사회로부터 그들을 최대로 고립시키는데로 중점을 두고있다.

미국에서 재판의 실책이 빈번하다. 1998년에 조직된 단체 《잘못된 판결쎈터》(Center on Wrong Convictions)는 일리노이주에서 기소된 36명의 무죄를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중에는 2012년 1월에 석방된 리버도 있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강간 및 살인죄로 20년간 감옥살이를 하였다.

쎈터는 미시간대학 법학부와 함께 1989년이래 전국적으로 도합 940여건의 잘못된 판결이 철회되였다는것을 밝혀냈다. 사형관련정보쎈터(Death Penalty Information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1973년이래 사형판결을 받은 140명이 무죄로 인정되였다.

미사법성 법통계국에 의하면 미국수감자수의 60%이상이 인종 및 소수민족대표들이다. 2010년 3월에 미국형벌규제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같은 범죄를 범하고서도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10% 더 긴 감금형을 받는다.

미국에서 근 6만명이 오랜 기간 독감방에서 생활하고있고 2만명은 항시적으로 혼자 감방에 앉아있다. 실례로 국제대사령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리조나주에서는 2 900여명 즉 미성년을 포함한 죄수 20명당 1명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수감되여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처지로 하여 흔히 커다란 심리적허탈상태에 빠지군 한다.

2011년 7월에 캘리포니아감옥의 수감자들이 독감방들에서의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또다시 단식을 하였다. 인권 및 헌법적권리보호쎈터의 자료에 의하면 이 주에서는 1만 1 000명의 수감자들이 독감방에서 형기를 치르고있는데 그들은 주로 인종 및 소수민족대표들이다. 그중 400명이 2012년 3월에 고문문제담당 유엔특별보고관과 횡포한 수감조건에 관한 유엔실무그루빠에 자기들의 생활조건에 대해 신소하였다.

미사법성 법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약 21만 6 000명의 감옥, 미성년교화소 수감자들이 성폭행을 당하였다. 2003년 9월이래 총 피해자수는 약 190만명에 달한다.

2011년 9월 미국국민자유동맹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지부는 정기적인 구타를 비롯하여 로스안젤스의 수감자들에 대한 경찰들의 정상적인 폭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옥장들의 묵인하에 수감자들은 같은 감방 수감자들로부터 육체적 및 성적폭행을 당하고있다. 이 비정부기구는 감옥에서 폭행을 당한 이전 죄수들과 현 수감자들의 이름으로 련방재판소에 감옥장 엘. 바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수감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실례는 또한 미국감옥들에 있는 로씨야공민 웨. 아. 부뜨와 까. 웨. 야로쉔꼬를 둘러싼 상황을 통해서도 들수 있다. 그들은 의료봉사가 한심하고 감옥당국이 생트집을 걸며 부당하게 독감방에 억류시키는데 대해 루차 신소하였다. 로씨야인들과 그 변호사들이 수차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측면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판결을 받은 또 한명의 로씨야공민 유. 게. 미헬은 오랜 기간 창문도 없는 독감방에서 살고있으며 그가 산보를 하거나 다른 죄수들과 접촉하는것이 금

지되고있다.

2012년 4월에 미국최고재판소는 감옥당국이 새로 들어오는 모든 죄수들을 범죄의 엄중성정도에 관계없이 발가벗기고 검사를 할 권리를 가진다고 결정하였다. 벌금을 물지 않았다는 잘못된 죄명으로 체포되여 6일동안 두번이나 이러한 굴욕적인 모욕을 당한 에이. 플로렌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사 에스. 브라이어가 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감옥당국은 전조등을 켜지 않았거나 소음기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것과 같은 소소한 위법행위때문에 억류된 사람들에게 이따금 옷을 발가벗을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나어린 범죄자들의 처지도 비정부기구들의 특별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현재 약 7 000명이 종신감금형을 언도받고 그중 2 500명에게는 사면권이 없다. 일부 주들에서 판사들은 미성년들이 일정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감형을 고려하지 않고 종신감금형을 언도할 의무를 걸머지고있다.

2010년 5월 미국최고재판소는 살인과 관련이 없는 범죄에 한해 사면권이 없는 종신감금형태의 형벌을 주는것을 위헌적인것으로 인정하였지만 이 결정은 미성년들의 6%에게만 작용하였다.

사망을 초래한 범죄에 대해 말한다면 2012년 6월에 미

국최고재판소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들이 종신형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게 가혹한 형벌은 법에 따라 의무적인것으로 될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이단자들과 잠재적인 테로 분자들에 대한 감시

(현 미국법은 사실상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재판소의 령장이 없이 외국인들과 미국인들의 모든 전자통신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을 할수 있게 한다. 2011년에 미국의 법보호기관들은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전화정보를 공개할데 대한 130만여건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특히 외국공민들이 범죄활동에 관계되였다고 생각할 근거조차 없는데도 감시대상으로 될수 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권리가 자주 침해당하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의 DNA자료기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것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국가안전에 예민한 정보를 비밀로 보존할수 있는 집행정권기관의 특권을 빗대고 백악관은 의연 재판소들에서 죠지 부쉬행정부가 승인한 대규모적인 전자감시계획의 합법성문제를 검토하는것을 의연 방해하고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로이후 즉시 죠지 부쉬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재판소의 령장이 없이 전화내용을 도청하고 테로단체들과 련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보내오는 전자 및 전화통보문을 그들이 미국령토에 있는 경우에조차 감시하는것을 승인하는 비밀지령서에 수표하였다.

현 미국법은 사실상 정보기관들로 하여금 외국인들과 미국공민들의 모든 전자통신을 재판소의 령장이 없이 전면적으로 검열하는것을 승인하고있다. 법은 또한 정보통신회사들에 외국의 대상들에 대한 첩보자료수집에서 정부와 협력하고 테로분자감시계획의 범위내에서 그들에게 련방법보호기관들과의 현재와 앞으로의 협조와 관련한 소송을 면할수 있는 법적특권을 제공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비밀로 할데 대해 의무화하고있다.

2011년에 미국의 법보호기관들은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전화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데 대한 130만여건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현재 미국회에서는 정부기관들과 기술회사들사이의 정보교환의 개선에 관한 1947년 법 《국가안전에 대하여》를 수정할것을 예견하는 법안 《싸이버위협에 대한 정보교류와 그 보호에 대하여》를 검토하고있다. 법안은 정보기관들과 기타 정부기관들이 사영분야에 비밀정보를 제공하는것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회사들이 당국에 잠재적인 싸이버위협에 대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자극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은 《마이크로쏘프트》, 《페이스북》, 《IBM(아이비엠)》, 《오라클》, 《인텔》 등 많은 대규모정보통신회사들과 미국상공회의소의 지지를 받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옹호단체들이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하고있는바 그들은 《싸이버간첩행위》에 관한 법이 사실상 정부가 개별적인물들의 웨싸이트열람리력을 감시할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있다고 간주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생활의 불가침권이 침해당하고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2011년 2월에 오바마는 2001년 9월 11일 테로이후 채택된 《애국주의행동》조항들의 효력기한을 4년 더 연장할데 대한 법에 수표하였다. 이 조항들은 법보호기관들과 특수기관들로 하여금 나라의 전체 지역에서 가동하는 《만능령장》에 따라 혼자서 활동하는 제대군인들(지어 그들이 테로단체들과 련관이 있다는 확인이 없다고 해도)을 감시하고 기업거래문건들을 검열하며 의심스러운 임의의 번호가입자들의 전화내용을 도청하게 하고있다.

련방수사국은 테로와 투쟁한다는 구실밑에 현재까지 아랍인들과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감시계획을 실행하고있다. 특수기관들은 비법이주민들에게 그들의 교회공동체안에 있는 《의심스러운 분자들》을 감시하여야만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해주겠다고 제의하고있으며 그들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추방하겠다고 위협하고있다. 2012년 6월에 이슬람교를 믿는

뉴저시주의 8명의 주민이 뉴욕경찰서가 2007년에 이슬람교공동체에 대한 큰 규모의 감시계획(뉴욕과 뉴저시의 검사총장들은 이미 계획이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였다.)실행과정에 자기들의 헌법적권리를 위반하였다고 하면서 련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6년 법 《전자통신비밀에 대하여》에 의하면 미국인들과 달리 《푸른 증명서》(미국거주권)를 가지고있지 않는 외국인들은 지어 그들이 범죄활동에 관여하였다고 할만 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조차 전자감시대상으로 될수 있다.

AP통신이 입수한 경찰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데 의하면 2001년 9월 11일 테로사건이후 뉴욕경찰은 이슬람교사원참배자들, 이슬람교신봉자들이 모여드는 서점, 매대 등지를 찾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였다.

2011년 봄에 미국-이슬람교관계리사회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 거기서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한 캘리포니아대학생 아피피의 이름으로 미사법성과 련방수사국에 대한 소송을 련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처음 그 젊은이는 그것을 폭탄으로 단정하였지만 그가 인터네트에 그 장치를 찍은 사진을 게재한 후 련방수사국요원들이 그를 찾아와 그것을 회수해갔다.

2012년 1월에 최고재판소는 죤스사건에 관해 판결을 내렸는데 그 사건이란 경찰이 사전에 재판소의 령장을 받지

않고 28일동안 혐의자의 자동차에 GPS장치를 설치하고(메릴랜드의 이전 경찰 헤론의 진술에 의하면 주들의 법보호기관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형사범죄수사과정에 이러한 장치들을 리용하고있다.) 움직임을 감시함으로써 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미련방수사국의 DNA자료기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2009년 4월까지 거기에 련방급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의 유전정보만 들어있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체포된 모든 사람들과 억류된 비법이주민들의 DNA자료들(이런 자료기지가 15개 주들에 구축되였다.)이 들어있다. 비정부기구들은 미국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을 위한 자료철을 묶는 경찰국가로 전락되였다고 간주하고있다. 또한 련방수사국이 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는것이 지적되고있다. 실례로 나라 주민의 13%밖에 안되는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의 DNA자료는 수집된 총 자료가운데서 약 40%를 차지한다.

미국가반테로쎈터가 장악하고있는 잠재적인 테로분자들에 대한 전문자료기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는것도 인권옹호활동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름이 꼭같은 공민들의 입국이나 탑승이 금지되여 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09년 12월 데트로이트비행장에서의 테로미수가 있은 후 미국령공을 지나는 미국 혹은 외국비행기들에 오르지 못하게 되여있는 인물들의 명단이 6배(2009년 12월이전에는 그 수가 약 3 400명이였지만 2010년에는 1만명, 현재는 약 2만 1 000명이며 그중 약 500명은 미국공민이다.)나 늘어났다. 결과 일부 미국인들은 외국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있으며 강제추방지에서 살고있다. 2010년 6월에 미국공민자유동맹은 그런 명단에 속한 17명 공민들의 이름으로 미국정부에 재판소송을 제기하였다. 인권옹호활동가들은 련방수사국이 해외에서 특수기관들의 관심사로 되는 인물들을 변호사없이 심문하는데 이러한 수법을 적용하고있다고 예측하고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한 심문시 고문이 적용되고있다. 특히 2009년에 예멘과 소말리아를 방문한것으로 하여 요시찰명단에 오른 후 쿠웨이트에서 체포된 19살 난 소말리아계미국인 무하메드는 심한 구타를 당하였다. 2010년 7월에 다른 소말리아계미국인 위힐리는 2개월간 에짚트감옥에서 심문을 받은 후 미국에 돌아왔다.

무장충돌지대들에서의 무차별적인 힘의 사용, 의도적인 살인계획

(2012년 8월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이라크에서의 충돌은 11만 7 000명의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그중 약 1만 4 700명은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제련합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불굴의 자유》작전이 개시된이래 약 1만 4 400~1만 7 200명의 평화적공민이 죽었으며 9 000명은 미국주도의 국제련합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테로활동을 하는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무인기로 소멸하는 작전이 계속되고있다. 이러한 정밀타격의 결과 파키스탄에서는 900명까지의 평화적주민들, 예멘에서는 150명까지의 평화적주민들, 소말리아에서는 60명의 평화적주민들이 죽었다. 미국군인들이 주민들을 우롱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임신부들과 어린이들을 총살하며 불구로 만들거나 시체를 여러 토막으로 갈라놓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있다. 사건이 가장 엄중할 때에만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을 추궁받고있다.)

미국은 무장충돌지대들에서 무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국제기구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고있다.

－ 이라크

《이라크사망자계산》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월에 이르러 이라크에서의 충돌은 11만 7 000명 민간인(2011년에는 4 000명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그중 1만 4 700명(13%)정도가 미국주도하의 국제련합군(주로 항공타격과 무인기들에 의해)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2012년 1월에 미사법성 산하기관들은 2005년 11월 《하디트에서의 대량학살》죄로 기소된 미해군 하사관 부테리츠사건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그때 미해병대원들이 자작폭발물에 의해 죽은 동료 테라자스에 대한 복수로 24명의 평화적인 이라크인들을 쏘아죽였다. 이 사건으로 도합 8명이 감금되였는데 그중 1명은 무죄로 인정되고 6명에 한한 기소는 완전히 기각되였다. 《직무를 어긴》 자기의 죄과를 인정한 부테리츠는 병졸로 떨어졌지만 재판기관과 《사업》을 한 결과 최소한의 형기마저 회피하였다.

2012년 8월 미사법성은 악명높은 미국개인경호회사 블랙크워터(《지－써비시즈》로 재등록하였다.)의 이라크내무성지도부 매수시도사건에 관한 조사를 중단하였다. 이 회사는 100만US$의 뢰물을 가지고 이라크에서 영업허가증을 받고 2007년 9월 회사직원들이 바그다드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한 17명의 민간인들을 살해(20명은 부상을 입었다.)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봉쇄하려고 시도하였다. 블랙크워터의 계약군인들은 미국대사관 경비대와 동행하면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구실밑에 니수르광장에서 살륙을 감행하였다. 그런데도 미국무성은 이 비극적사건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서야 이 회사의 봉사를 거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미국재판소가 로씨야공민 부뜨가 꼴롬비아봉기군에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그것도 증명되지 못하였다.)하였다는 죄 하나만으로 25년간의 감금형을 언도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블랙크워터의 후신회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단에 비법적으로 무기를 납입하였다는것을 공식 인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군사 및 대외정치기관들은 무장충돌지역들에서 《너절한 일》을 벌리기 위해 계약군인들의 봉사에 적극 의존하고있다. 미국정부는 국제인도주의법규범위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영회사들이 국가기능을 대신하는 이런 《외부위탁》행위를 하고있다.

현대고용병들의 지위가 모호한 기회를 그들의 변호사들도 적극 활용하고있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미국국가의 위임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경호회사 성원들의 특권을 구실로 미국재판소들에서 이라크인사망자가족들의 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애를 쓰고있다. 결과 아직까지 니수르광장에서 있은 비극적사건의 관계자들중 형사책임추궁을 받은자

는 한명도 없다.

—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에서 《불굴의 자유》작전이 개시된이래 평화적주민들속에서의 사망자수는 도합 약 1만 4 400～1만 7 200명(간접적인 사망자들까지 고려한다면 3만 7 200명)이다. 6 200～9 000명정도가 미국주도하의 국제련합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당국이 전한데 의하면 2011년 2월 쿠나르주에서 진행된 미군의 작전과정에서만도 22명의 녀성과 30여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65명의 평화적주민이 죽었다. 그해 3월에는 나토의 직승기가 7살부터 15살까지 나이의 아프가니스탄미성년 9명을 쏘아죽였다.

나토군의 공습으로 2012년 2월 8일 카피사주의 지아바마을에서 7명의 어린이와 1명의 어른이, 2012년 5월 27일 파크티아주에서는 6명의 어린이와 1명의 녀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 6일 로가르주에서의 폭격으로 18명의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주민들이 죽었다.

분쟁지역 주민들속에서 미군의 행동이 특별한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실례로 2012년 1월 죽은 탈리반성원의 시체를 놓고 우롱하는 4명의 미해병대원들을 찍은 편집물이 인터네트에 오르는 추문이 발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대통령 하

미드 카르자이는 그들의 행동을 《매우 비인간적인》 행위로 평하였다.

2012년 2월 미군은 바그람공군기지에 있는 수감자감방들을 청소하면서 코란경을 포함한 수십권의 이슬람교서적들을 소각하여 대중적인 항의행동을 불러일으켰다.

2012년 3월 11일 미군하사 로버트 베일즈는 칸다하르주의 판즈와이에 있는 기지를 빠져나와 린근의 한 마을에 가서 9명의 어린이와 1명의 임신부를 포함한 16명의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사살하고 또 6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국회위원회는 이 《칸다하르살륙》에 다른 미국군인들도 참여하였을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2012년 4월 제82항공륙전사단의 한 병사가 《로스안젤스 타임스》에 자기 동료들이 죽은 무장성원들의 시체들과 함께 찍은 18장의 사진을 넘겨주었다.

가장 극단한 경우에만 범죄자들이 형사책임을 추궁받고있다. 실례로 2010년 여름 《시험삼아》 일부 평화적인 아프가니스탄인을 마구 선택하여 죽인 5명의 미군병사가 기소되였다. 사망자들속에는 15살 난 미성년도 있었다. 또한 《죽음의 려단》성원들은 죽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을 전리품으로 잘라냈으며 그 시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멀로크라는 한자는 3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을 살해하였다는것을 인정하고 자기 동료들에 대한 증언을 하겠다는것을 약

속한 후 24년간의 감금형을 언도받았으며 그의 책임자인 깁스는 2011년 11월에 10년후의 특사권과 함께 종신감금형을 선고받았다.

미중앙정보국은 전쟁지역외에도 외국령토들에 있는 테로분자들을 《정밀》소멸하기 위해 무인비행기구를 리용하는 비밀계획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미중앙정보국은 이러한 기구들을 리용하여 파키스탄에서 적어도 327차례의 공격을 가하였다. 결과 482～852명의 평화적인 파키스탄주민을 포함한 2 500～3 200명(그중 어린이는 175명)이 죽었다. 2011년 3월 다타 켈마을에 대한 공습은 40여명의 민간인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예멘에서 류사한 작전으로 인해 58～149명의 평화적주민(그중 어린이 24～31명)이, 소말리아에서는 11～57명의 민간인들(그중 어린이 1～3명)이 죽었다.

인권옹호활동가들은 이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것은 본질상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법정외의 사형과 전혀 다를바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실례로 2010년 5월 법정외의 사형문제담당 유엔특별보고관 앨스톤은 보고서를 발표하여 미국의 무인기리용계획이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옹호분야에서의 기준들에 부합되는가를 문제시하였다. 일부 평가자료에 의하면 이 경우 또한 특수기관들이 계획적

인 정치적살인에 참가하는것을 금지한 1981년 12월 4일부 레간의 지시문 제12333호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행정부는 무인기들의 리용으로 평화적주민들이 죽는것을 충분히 허용될수 있는 《부차적인 손실》로 보고있다.

2011년 9월 《조준》타격으로 처음으로 미국공민인 이슬람교선교사 알 아블라키가 죽고 또 같은 공습으로 또 한명의 미국공민인 이슬람교인터네트잡지 편집원 에스. 한이 죽었다.

많은 법률가들은 해외에서의 미국공민들에 대한 의도적인 살인이 재판소의 판결이 없으면 그 누구도 죽일수 없다는 미국헌법의 다섯번째 수정안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간주하고있다.

유엔인권리사회 법정외의 사형문제담당 특별보고관 헤이네는 인권리사회 제20차회의때 미국에 관한 년례보고서에 따르는 첨부문건을 발표하였다. 문건은 이전 특별보고관이 2008년 6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제기한 권고서들에 대한 미국당국의 실행정형을 분석하였다. 25건의 권고서들중 1건만이 완전히 실행되고 3건은 부분적으로 실행되였다.

사람랍치행위와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들, 고문

(뽈스까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타이, 마로끄, 지부티, 로므니아, 리뜨바령토내에 있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미당국은 장차 이 감옥들에 수감할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랍치하고있다. 비밀감옥들에서 미국은 고문행위를 마구 감행하고있다. 이 범죄행위에 책임있는자들은 미사법당국의 보호를 받고있다. 미당국에 대한 이 특수감옥수감자들의 소송은 차단되고있다.)

2006년 9월 죠지 부쉬는 미중앙정보국 비밀감옥들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미중앙정보국은 2002년-2003년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타이, 마로끄, 지부티, 로므니아, 리뜨바, 뽈스까를 비롯한 외국령토에 10여개의 이런 감옥들을 건설하고 법률적공백상태에서 100여명의 수감자들을 감금하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을 포함하여 세계사회계는 테로에 관여한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비법적으로 체포한데 대해 규탄하였다. 강제억류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는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계획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랍치문제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특수기관의 위법적인 행위를 폭로하는 이런 보고서들은 유럽리사회(2006년 6월 7일 발표)와 유럽의회(2007년 2월 14일 비준)의 특별위원회들에 의하여 작성되였다. 문건들에는 테로에 가담한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수송하기 위하여 미중앙정보국의 비행기들이 비밀리에 1 200여회 비행하였다고 지적되여있다.

제3국에서 로씨야공민들을 제멋대로 체포하고 랍치하는것은 로미관계에 현저한 손실을 주고있다. 《가짜첩자》와 의심스러운 증거자료들에 기초하여 타이에서 로씨야공민 웨. 아. 부뜨를, 리베리아에서 까. 웨. 야로쉔꼬를 체포한것이 그 명백한 실례로 된다. 이들에게 가한 육체적 및 심리적압박은 조사와 재판과정이 의거한 증거자료자체를 의심케 한다. 우리는 부뜨와 야로쉔꼬에 대한 미국재판소의 판결을 부당하고 정치화된것으로 인정한다. 로씨야외무성은 국제법기구를 포함한 법률적가능성을 최대로 동원하여 이들이 조국으로 귀국하도록 노력할것이다.

2009년 4월 16일 미사법성은 2002년-2005년에 기관의 법전문가들이 작성한 4건의 비망록을 대폭 삭제하여 발표하였다. 이 문건들은 미국의 법과 국제법의 견지에서 미중앙정보국의 감옥들에 수감되여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심문방법을 적용하는것이 합법적이라고 역설하고있다.

총체적으로 공개된 문건들은 14가지의 《비전통적인》

심문방법을 적용하는것을 승인하였다. 그중에는 장시간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180시간 련속), 정상적인 급식을 묽은 대용식료품으로 바꾸는 방법, 수감자를 탄성이 있는 벽에 짓쫓기, 얼굴과 배때리기, 좁은 상자(때로는 곤충이 들어있는)에 감금하기, 근육아픔을 자아내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있기, 녀성조사관들이 있는 곳(적어도 14℃ 되는 방)에서 강압적으로 옷벗기기, 5℃이하의 찬물붓기, 물에 빠진 흉내내기(수감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판자에 꽁꽁 묶어놓고 얼굴에 물을 붓는 고문) 등이 있다. 물에 빠진 흉내내기방법에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중세기적인 고문을 들이댔다. 의학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방법은 뇌수와 페를 상하게 할수 있으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상원정보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고위지도부는 이 악명높은 비망록이 작성되기 전에 벌써 미중앙정보국 감옥들에서 《특별히 가치가 있는》 수감자들에 한해 《대안적인》 심문방법을 적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 2002년 5월-7월에 물에 빠진 흉내내기를 포함한 고문방법의 적용은 부대통령 체이니, 백악관국가안보문제담당 보좌관 라이스, 사법성 장관 애슈크로프트, 국가안전보장회의 법률고문 벨린져, 백악관 법률고문 곤쌀레스, 중앙정보국 장관 테네트의 동의를 받았다.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 강제억류에 관한 조사그루빠 보고서와 2007년 2월부 적십자국제위원회 비공개보고서, 2007년 유럽리사회의회 스위스상원의원 마르띠의 보고서 등 문건들에서는 미중앙정보국 비밀감옥들에 갇혀있는 수감자들에 대한 처우를 고문행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문을 반대하는 국제협약에 따르는 미국의 국제법적의무에 배치되게 미사법성은 테로혐의자들에 대한 심문에서 직접 혹독한 방법을 적용한 특수기관요원들과 고문을 승인한 책임자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미중앙정보국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하여 쓴 방법의 합법성을 조사할 위임을 받은 특별검사는 2건의 타살사건에 대해서만 형사소송을 제기할것을 권고하였다.

고문방법을 적용할 《법적》근거를 마련한 미사법성의 이전 관리들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 《법률가들》중의 한명인 죠지 유는 지금 캘리포니아종합대학 버클리분교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다른 죠지 바이비는 네바다주련방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였다.

미행정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예민한 정보들을 극비에 붙일 특권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고문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소송심의를 재판소가 중지하도록 하고있다. 실례로 행정부는 미국국민자유동맹이 이전 미중앙정보국수감자 5명의 이름으로 수감

자들을 비밀감옥에 실어나른 보잉회사의 자매회사 《제퍼슨 데이타플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심의를 차단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타이, 뽈스까에 있는 미국의 비밀감옥들에 감금되였던 아. 라힘 알 나쉬리는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수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그의 변호인들은 2010년 9월에 뽈스까최고검찰소에 자기들의 피변호인이 이 나라의 비밀감옥에 구류된 사건을 조사할것을 요구하였다. 2012년에 뽈스까최고검찰소는 전 뽈스까정보국장 제. 쎄먀뜨꼽스끼가 월권행위로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계획에 따라 비법적으로 포로들의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같은 리유로 예멘사람 엠. 알 아싸드는 2009년 12월에 미중앙정보국의 비밀감옥이 있는 다른 나라인 지부티에 대한 소송을 아프리카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012년 6월 미련방최고재판소는 테로로 재판을 받은 미국공민 파딜리가 전 국방장관 람스펠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거절한 련방공소원의 결정을 재심의할데 대한 미국국민자유동맹의 진정서를 심의하기를 거부하였다. 2002년 파딜리는 뉴욕의 일반감옥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톤시에 있는 군사기지에 끌려가 잠을 재우지 않고 조명이 없는 곳에서 장기간 혼자 격리시키며 온도를 급격히 변화

시키고 육체적폭력을 가하고 정신분렬제를 먹이며 근육아픔을 자아내는 스트레스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 고문을 받았던것이다.

한편 제9지구 련방공소원은 2012년 5월 《고문비망록》을 작성할 당시에는 혹독한 심문방법권리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심문시의 고문방법을 승인한 법률가 죠지 유에게 정신적침해행위에 대해 1US$를 보상할데 대한 파딜리의 상징적인 소송을 배격하였다.

2011년 8월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형무소수감자들에 대한 희롱사건으로 구류된 간수 그래너가 재판소가 판결한 형기보다 4년 앞서 마지막으로 출소하였다.

2012년 1월 아프가니스탄정부 특별위원회는 카불교외의 바그람미군사기지내에 있는 파르반감옥(2002년 여기서 2명의 아프가니스탄수감자가 죽었다.)의 수감자들이 고문(구타, 잠 안 재우기, 어둡거나 추운 감방의 구류)을 받은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였다. 2012년 9월에 이 감옥을 아프가니스탄무력기관에 이관하는 행사가 진행되였다. 아프가니스탄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50명의 외국수감자들이 여전히 미국측의 감시하에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후에 결정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2012년 3월에 감옥이관비망록이 조인된 후에도 국제련합군이 억류한 600명의 수감자들을 아프가니스탄법기관에 넘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다.

2012년 3월 독자적인 아프가니스탄인권위원회가 쏘로스 기금과 공동으로 보고서 《고문, 수감자인도, 공정한 재판의 거부》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국제안전지원군과 달리 2011년 유엔이 아프가니스탄감옥들에서 고문행위가 자행되고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성이 있는 이 감옥들에 포로들을 인도하는것을 중지하지 않았다. 문건에는 미국군인들에 의하여 인도된 수감자들이 아프가니스탄감옥들에서 구타, 전기충격 등 고문을 받은 10여건의 사실이 밝혀졌다.

관따나모미군기지감옥과 무기한 감금

(법적공백상태에 있는 미국의 관따나모특수감옥은 의연 존재하고있다. 거기에는 수십명의 수감자들이 있는데 그들중 대다수가 무기한 혹은 아무런 기소도 없이 여러해째 감금되여 있으며 이것은 국제법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정부가 《증거》로 제시한 감금자들의 죄는 지어 그것이 소문과 간접적인 증거물들에 기초하고있는데도 믿을만 한것이라고 하고있다. 현재 미국에서 채택되고있는 법들은 미행정부가 관따나모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말할수 없게 하고있다.)

2012년 1월에 관따나모(꾸바)의 미해군기지에 있는 특수감옥이 창설 10년을 맞이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선거전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반대라고 하면서 감옥을 폐쇄하지 못하였다.

공개된 소식통들의 통보만 놓고보더라도 10년간 779명의 외국인이 관따나모에서 형기를 치르었으며 그중 8명이 사망(6명은 자살)하였다. 2012년 8월초현재 감옥에는 2002년에 파키스탄에서 체포되여 아무런 기소도 없이 법적공백상태에 있는 로씨야공민 민가조브를 포함하여 24개 나라에서 온 168명의 수감자가 남아있다. 감옥에 의연 남아있는 수감자들중에는 석방되여야 할 대상이라고 미행정부자체가 인정한 사람이 87명이나 된다.

2011년 12월 31일 미국대통령은 관따나모의 수감자들을 미국령토에로 이송하고 그들을 3국들에 넘기는것을 제한하기 위한 예산자금리용의 금지를 또다시 연장한 법 《2012회계년도 국방비지출의 한도계선에 대하여》에 수표하였다. 이것은 본질상 가까운 앞날에 감옥이 폐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죄에 대한 믿을만 한 증거가 없거나 기한이 오래전에 만료된것으로 하여 형사소송을 조직하기 힘든 46명의 관따나모수감자들에 한해 미행정부는 아무런 기소도 없이 국제법에 배치되게 계속 무기한 감금하고있다.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30명의 예멘인들에게도 이러한 운명이 차례질수 있는바 미국당국은 그들의 조국에서 《안전조건이 개선될》

때에만 그들을 귀국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있다.

2006년 5월 유엔고문반대위원회는 미국이 아무런 기소도 없이 무기한 감금하는것은 고문과 기타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 및 처벌반대에 관한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2011년 3월 7일 오바마는 금후 법정밖의 수감자감금이 타당한가 하는것을 정기적으로 검열할것을 지시한 지시문 제13567호에 수표하였다. 첫 검열이 지시문이 발표된 후 1년안으로 시작되여야 하겠으나 청문회진행규정이 2012년 5월에야 발표되였다.

법 《2012회계년도 국방비지출의 한도계선에 대하여》는 또한 사람들의 법정밖의 무기한 감금에 관한 집행당국의 권한을 공식적으로 합법화(앞서 부쉬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는 이를 위해 2001년 9월 14일부 법 《무력사용을 승인함에 대하여》를 리용하였다.)하였다.

2008년에 국제공동체와 인권옹호단체들은 부메딘과 부쉬사건에 관한 미국최고재판소의 결정으로 하여 희망을 가졌었다. 그에 의하면 관따나모의 수감자들과 군사재판에 의해 기소된 사람들모두에게 미국국적을 가지고있든 가지고있지 않든 관계없이 그들에 대한 감금이 합법적인가 하는것을 재판에서 론쟁할수 있는 권리를 비롯하여 미국헌법이 담보하는 기본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이 결정이 채택된 후 2년간 관따나모의 수감자들은 변호사들에 의하여 련방구재판소들에 제기된 34건의 소송가운데서 19건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그후 콜럼비아특별구상급공소원에 의해 모든 석방판결이 철회되였다. 이 공소원이 고안해낸데 의하면 피고의 명백한 무죄증거가 없는 경우 정부가 제기한 수감자의 범죄증거들은 지어 그것들이 검증되지 못한 소문과 간접적인 증거물들에 기초하였어도 믿을만 한것으로 간주되고있다.

공소원은 2002년에 공개된 미국방성의 보고서에 의하면 관따나모수감자들을 심문하기 전에 그들에게서 진술을 보다 헐하게 받아내기 위해 정신분렬제 등을 강제로 먹게 한 사실을 무시하였다.

수감자들의 변호사들과 인권옹호활동가들은 콜럼비아특별구 공소원이 해당 문제에서 부메딘사건에 관한 결정을 완전히 외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012년 6월 미국최고재판소는 아무런 원인설명도 없이 7명의 감금자들에 한해 내려진 판결을 재검토할데 대한 그들의 요청을 기각함으로써 성과없는 그들의 재판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정된 규범에 의하면 관따나모수감자들은 자기들의 감금이 합법적인가 하는데 대한 재판에서 패한 경우 군사기지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더는 자기의 변호사들

과 만날수 없다.(이전에는 그러한 상봉이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조정되군 하였다.) 또한 변호사들은 많은 제한조치들 특히 다른 감금자들의 변호사들과의 정보교환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특별량해각서를 미국정부와 체결하여야 한다.

법 《2012회계년도 국방비지출의 한도계선에 대하여》는 또한 인물들의 감금에 대한 미군무력의 권한을 확대(제1022조)하였다. 이제는 군사행동과정에 미국인들에게 체포된 모든 알 카에다성원들과 그와 련관된 그루빠성원들 그리고 미국과 그의 련합군동맹국들을 목표로 한 공격계획혹은 실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법보호기관들이 아니라 군대에 감금되게 된다.

2. 2013년 미국인권기록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웹싸이트】

머 리 말

세계인권법관으로 자처하는 미국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2013년 나라별인권보고서》에서 또다시 세계의 근 200개 나라와 지역의 인권상황에 대해 제멋대로 비난하고 함부로 평가하면서도 오직 미국자체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백방으로 가리우고 숨기고있다. 사실상 2013년 미국의 인권문제는 의연 엄중하며 많은 분야에서는 지어 계속 악화되고있다.

– 2013년 미국에서는 4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총격사건이 30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하여 137명이 사망하였다. 워싱톤의 해군복합시설내 사령부건물에서 있은 총격사건으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 미국은 《프리즘》계획을 실시하여 국내외에서 장기간의 대규모적인 감시, 통제를 진행함으로써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인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 미국은 보편적으로 단독구금형벌을 실시하고있다. 미국이 독감방에 구금한 사람들은 8만여명에 달하며 지어 40년이상 독감방에 구금된 사람도 있다.

- 미국의 취업형편은 의연 엄중하고 실업률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최저수입가정의 실업률이 21%에 달한다. 집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에서 집없는 사람수는 16%로 증가하였다.

- 농업소년로동자가 수많이 존재하고있으며 신체건강이 엄중한 침해를 받고있다.

- 미국은 파키스탄과 예멘 등 나라들에서 빈번히 무인기를 리용한 습격을 감행하고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04년이래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376차례의 무인기공습을 감행함으로써 926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 미국은 의연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녀성에 대한 온갖 형식의 차별을 없앨데 관한 조약》,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자권리에 관한 조약》 등 유엔의 일련의 핵심적인 인권공약을 비준하지 않고있거나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있다.

생명 및 신변안전에 대하여

2013년에 공개된 자료는 미국에서 폭력범죄사건이 늘어나고 총격사건이 부단히 발생하여 공민들의 생명 및 신변안전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폭력범죄사건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있다. 미련방수사국이 2013년에 발표한 년례적인 《범죄통계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 도합 121만 4 464건의 폭력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그중 암살, 오살, 과실로 인한 살인사건이 1만 4 827건이고 강간사건이 8만 4 367건이며 강탈사건이 35만 4 522건이고 폭력피해사건이 76만 739건이다. 미사법성 통계국이 2013년 10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에 비해 2012년 미국에서 12살이상의 미국인 1 000명당 폭력피해자수는 22.6명으로부터 26.1명으로 늘어났다.

2013년 4월 15일 미국 보스톤국제마라손경기장에서 련쇄적인 폭탄폭발사건이 발생하여 26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3명이 사망하였다. 그중 1명은 8살 난 어린이이다. 미국의 해당 부문은 이것이 엄중한 테로사건이라고 인정하였다.(주해 1을 볼것.)

《워싱톤 포스트》가 2014년 1월 1일 보도한데 의하면 21살 난 한사람이 2013년 9월 17일 워싱톤 서남거리에서 암살당함으로써 이 구역에서 2013년에 80번째로 되는 암살피해자로 되였다. 2013년에 이 구역에서는 도합 103건의 암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2012년의 88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것으로 된다.

미국은 세계적으로 개인총기류보유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미련방수사국이 2013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미국에서 총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사람 2 109만 3 273명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이것은 2012년의 1 959만 2 303명에 비해 150만 970명이 늘어난것으로 된다.(주해 2를 볼것.)

2013년말현재 총기류를 보유한 미국인은 3억명에 달하였다. 많은 총기류가 미국사회에 널려져있어 빈번히 총격사건을 초래하고있다. 최근년간 미국에서는 매해 10여만명의 사람들이 총격사건에 맞다들리고있으며 그중 3만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총격폭력범죄 혹은 자살이나 오살 등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미국정부는 아직도 총기류를 관리통제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다.(주해 3을 볼것.)

2012년 콜로라도주총격사건과 쌘디 후크초등학교총격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언론들은 총기류관리를 강화할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미국정부는 총기류구매자들의 배경에 대한 조사확대와 공격무기 및 중무기구매를 금지시킬데 관한 내용이 포함된 총기류통제방안을 제기하였다. 립법과정을 거친 후 민주당과 공화당의원들이 제출한 총기류통제법안은 공격무기 및 중무기구매를 금지시킬데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총기류구매자들의 배경에 대한 조사확대를 요구하는 조항만 남겨두었다. 설사 이 조항이 상당히 제한적인 총기류통제방안이기는 하지만 4월 17일 미국회 상원

에서 부결되였다.(주해 4를 볼것.)

이와 함께 미국의 각 주들에서는 개인들의 총기류휴대에 대한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였다. 일리노이주에서 2014년 1월 5일부터 정식 총기류은닉법을 실시한데 따라 총기류를 숨기는것이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두 합법적인것으로 되였다. 이것은 학교와 공원, 식당 등 소수의 공공장소를 제외하고 총기류소유증서를 가진 사람은 기타 어떠한 장소들에서도 휴대한 총기류를 숨길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주해 5를 볼것.)

총격폭력범죄가 엄중하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해마다 총격폭력범죄로 1만 1 00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있다.(주해 6을 볼것.)

미련방수사국이 2013년 가을에 발표한 년례적인 《범죄총계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암살사건중 69.3%, 강탈사건중 41%, 엄중한 폭력사건중 21.8%가 총기류사용에 의한것이였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여러건의 엄중한 총격폭력사건이 일어나고있다. 미사법장관은 2013년 10월 21일 최근년간 미국에서 대규모적인 총격사건수가 2배로 늘어났다고 말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4명이 대규모총격사건에서 총격을 받았으며 그중 207명이 목숨을 잃었다.(주해 7을 볼것.)

《유에스에이 투데이》가 2013년 12월 16일에 보도한데 의하면 2013년에 미국에서는 4명이상 사망한 총격사건이 30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하여 13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3년 9월 16일 미국 워싱톤의 해군복합시설내 사령부건물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애런 알렉시스가 16일 오전 미국 워싱톤의 해군복합시설내 사령부건물에 들어와 청사의 4층에서 사람들이 오고가는 1층에 있는 식당을 향해 마구 사격하였으며 법집행성원들과 30분동안 교전을 벌리던중 총에 맞아죽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고 여러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주해 8을 볼것.)

(주해 1) 《유에스에이 투데이》 2013년 12월 6일
(주해 2) Town hall웹싸이트 2014년 1월 7일
(주해 3) Gun FAQ웹싸이트, Gun Crime Statistics 웹싸이트
(주해 4) 영국 BBC방송웹싸이트 2013년 4월 17일
(주해 5)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4년 1월 8일
(주해 6) 《데일리 텔레그라프》웹싸이트 2013년 12월 7일
(주해 7) 《후핑톤 포스트》웹싸이트 2013년 10월 21일
(주해 8)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9월 17일

공민의 권리와 정치적권리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제멋대로 민중을 감시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감옥에서 악형을 제멋대로 적용하여 관심을 모으고있으며 선거의 페단과 권력의 방해는 고질적인 악습으로서 공민들의 리익을 침해하고있다.

정부는 민중을 제멋대로 감시, 통제하고있다. 이전 중앙정보국 고용인이였던 스노우덴은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진행한 전자도청계획인 《프리즘》계획을 폭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정보기관이 마이크로쏘프트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야후 등 9개의 인터네트회사와 일부 큰 통신봉사회사들이 제공한 자료를 리용하여 사람들의 개인관계와 사회활동을 제 마음대로 추적하였다.(주해 9를 볼것.)

《워싱톤 포스트》웹싸이트는 2013년 6월 7일 미국가안전보장국과 련방수사국이 일부 네트워크회사의 중심봉사기와 접촉하는것을 통해 사용자들의 자료에 직접 접촉하였으며 사용자우편물과 대화기록, 동영상, 음성화일, 문건, 사진 등 인터네트가입정보를 실시간 추적하고 특정목표 및 그와 련계된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전면적으로 감시, 통제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뉴욕 타임스》가 2013년 9월 29일에 폭로한 정부문건

에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2010년 11월부터 정보관리들이 이 국에서 수집한 대량의 미국공민개인자료를 리용하고 그들의 거래대상, 특정한 시간에 그가 있은 위치와 동행자 등 개인정보를 분석하는것을 승인하였다는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감시는 미국인들의 전화와 전자우편기록을 분석하고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을 하나의 《련락사슬》로 련결하며 미국공민들의 수많은 개인비밀을 정부앞에서 폭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있다. 영국 《가디언》웹싸이트는 2013년 6월 6일 미국의 최대통신봉사제공회사들중 하나인 베리존통신회사가 매일 미국가안전보장국에 쌍방의 전화암호, 지점, 통화시간 등 자기 계통내의 모든 전화통화정보를 제공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도이췰란드 《슈피겔》웹싸이트가 2013년 9월 7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가안전보장국 내부문건은 미국정보기구가 애플손전화기사용자의 자료와 체계설비 그리고 가장 안전하다고 간주되는 카나다 RIM회사의 블랙베리손전화기를 도청할 능력이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해독프로그람을 리용하여 주소록, 통보문교환량, 사용자위치정보 등을 포함한 지능손전화기의 사용자정보를 얻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은 애플설비에 대한 콤퓨터동시추적을 한 후 이미 제작한 프로그람으로 애플손전화기의 38기능을 대리할수 있다.

《뉴스데이》가 2013년 6월 14일 보도한데 의하면 9대 주요 국제공민자유련맹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미련방정부가 벌리는 비밀정보감시항목 《프리즘》계획이 국제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간주하였다. 공동성명은 《이렇게 방대한 수단을 동원하여 감시하는 행위는 사적권리와 언론의 자유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위반한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미련방마약대책계획본부 성원들과 기타 특수요원들은 미국 AT&T회사와의 협조를 통해 이 회사의 모든 고객들의 전화기록을 얻을수 있을뿐아니라 이 회사의 교환대를 거치는 모든 전화기들의 기록을 얻을수 있다.(주해 10을 볼것.)

《로스안젤스 타임스》웹싸이트가 2013년 9월 26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련방수사국은 오래동안 국내수사사업에 무인기를 리용하여 미국사람들에 대한 비밀감시를 진행하였다. 미사법성은 2012년초에 두달이라는 기간에 AP통신의 편집자들과 기자들의 20개의 전화선을 통한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획득하였다.(주해 11을 볼것.)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고있다. 사람들에 대한 단독구금현상은 보편적이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감옥들에는 형을 받고 단독구금된 사람들이 통풍이 안되고 해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감방에 감금되여있으

며 기타 죄수들과 접촉하기 힘든것으로 하여 신체에 엄중한 피해를 받고있다.(주해 12를 볼것.)

미국에는 독감방에 갇힌 죄수가 8만명이나 되는데 캘리포니아주에만도 1만 2 000명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펠리카만감옥에는 400명이 넘는 죄수들이 10년이 넘게 독감방에 갇혀있다. 죄수들은 하루에 23시간동안 길이 3.5m, 너비 2.5m 되는 감방에 구금되여있다.(주해 13을 볼것.)

어떤 죄수는 독감방에 지어 40년이상 갇혀있다.(주해 14를 볼것.)

뉴욕주감옥에는 매일 3 800명의 죄수들이 독감방에 갇혀있다.(주해 15를 볼것.)

49살 난 죄수 윌리암 블레이크는 쇠침대밖에 없는 독감방에 26년동안 갇혀있다.(주해 16을 볼것.)

2013년 유엔인권리사회 악형문제담당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는 독감방구금악형문제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미국에 고소장을 보냈다. 그는 설사 짧은 기간 독감방에 구금하여도 악형으로 될수 있다고 밝혔다.(주해 17을 볼것.)

캘리포니아주감옥에서는 3만명의 죄수들이 2013년 7월 8일부터 단식하면서 감옥측에서 독감방구금정책을 바꿀것을 요구하였다. 단식항의는 2개월동안 계속되였다.(주해 18을 볼것.)

2014년 1월 29일 영국 《데일리 메일》네트워크에는 뉴욕의 촬영가 스코트 휴스톤이 아리조나주감옥에서 찍은 죄수들의 로동 및 생활을 담은 사진이 올랐다. 사진은 감옥에서 죄수들이 로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에도 발에 족쇄를 차고있으며 1개 조에 5명씩 9in간격으로 함께 묶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휴스톤은 죄수들이 발에 족쇄를 차고 한줄로 서서 로동을 하는 모습이 지난 200년전의 노예제시기를 방불케 하였다고 말하였다.

선거는 일부 사람들의 오락으로 되였다. 많은 조사결과는 정책작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재산정도와 관계되며 70%의 사람들은 수입수준과 재산 등 측면에서 렬세한 자리에 있는것으로 하여 정책작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뿐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것이나 같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과 1%의 미국인들이 정책작성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생각하였던것을 얻을수 있다.(주해 19를 볼것.)

미국공민의 정치참여열의는 점차 떨어지고있다. 2013년 5월에 진행된 로스안젤스시장선거에서는 23.3%의 등록된 선거자들만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시장은 등록된 선거자의 불과 12.4%에 해당한 22만 2 300장의 선거표를 얻고 당선되였다.(주해 20을 볼것.)

민주주의에 의한 균형조절은 권력의 제동기로 되였다.

2013년 10월 1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환자보호와 의료법안평가》를 놓고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것으로 하여 국회는 예산지출안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며 련방정부는 핵심부서를 제외하고 부득불 운영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 스탠포드종합대학 민주주의, 발전 및 법치연구쎈터 연구원 프란씨스 후꾸시마는 2013년 10월 4일 《워싱톤 포스트》웹싸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균형조절제도는 점차 《부결정치체제》로 변하고있다, 즉 소수사람들의 립장을 대표하는 여러 정치파벌들이 다수파의 행동을 저지시킬수 있으며 그들이 정부의 어떠한 행동도 저지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의 도청사건은 권력에 대한 균형조절이 초래한 부정적결과이다. 새로운 민간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극히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2014년을 맞이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국가의 가장 엄중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가에 대해 희망을 가지지 않고있다. AP통신이 진행한 공공문제와 관련한 민간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대폭 개편하거나 철저히 전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고있다.(주해 21을 볼것.)

2014년 1월 미국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론의가 많은 미국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해 평하면서 《이러한 론의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호상간의 의견상

이가 정부로 하여금 페쇄되게 하고 미국의 신앙과 명예에 위협을 주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한다면 이러한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많은 미국인들도 이러한 썩어빠진 정치론쟁에 싫증을 느끼고있다.》고 말하였다.(주해 22를 볼것.)

(주해 9) 《워싱톤 포스트》웹싸이트 2013년 6월 7일
(주해 10) 《후핑톤 포스트》 2013년 12월 20일
(주해 11) 《로스안젤스 타임스》웹싸이트 2013년 5월 13일
(주해 12) 영국 BBC방송웹싸이트 2013년 6월 12일
(주해 13) 로이터통신웹싸이트 2013년 8월 23일
(주해 14) 카나다방송(CBC)웹싸이트 2013년 10월 4일
(주해 15) 《월 스트리트 저널》웹싸이트 2013년 2월 19일
(주해 16) 《데일리 메일》 2013년 3월 15일
(주해 17) 《베이 뷰》웹싸이트 2013년 10월 14일
(주해 18) 《로스안젤스 타임스》웹싸이트 2013년 9월 15일
(주해 19) www.salon.com웹싸이트 2013년 8월 17일
(주해 20) 《로스안젤스 타임스》웹싸이트 2013년 6월 11일
(주해 21) 《후핑톤 포스트》웹싸이트 2014년 1월 2일
(주해 22) 미국대통령의 2014년 국정연설

경제 및 사회권리에 대하여

비록 경제가 회복되고있지만 미국공민들의 경제 및 사회권리보장은 의연 도전에 직면해있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있다. 2007년에 비해볼 때 2013년 전국의 35개 주가운데서 25살-54살 인구의 취직률이 떨어졌다. 2007년에는 이 년령의 사람들의 80%가 취직할수 있었지만 2012년 6월-2013년 6월에는 76%만이 취직하였다.(주해 23을 볼것.)

미국소비자뉴스 및 상업통로웹싸이트가 2013년 9월 16일 전한데 의하면 2012년은 미국로동자들의 평균실업시간이 39.5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래 가장 엄중한 해였다. 미국의 최저수입가정의 실업률은 21%로서 1930년대 불경기시기의 모든 로동자들의 실업률과 거의 비슷하다. 2013년 10월 미국제대군인들의 실업률은 6.9%였다. 9.11사건이후 제대군인들가운데서 24만 6 000명이 아직 직업을 얻지 못하고있다.(주해 24를 볼것.)

2014년 미국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비록 경제가 회복되고있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어렵게 살아가고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직업이 없다고 밝혔다.

빈부차이가 더욱 커지고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13년

9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미국의 빈곤인구가 47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총체적인 빈곤률은 15%에 달하였으며 약 640만명의 65살이상의 로인들이 매우 빈곤한 생활을 하고있다.(주해 25를 볼것.)

미국국세국의 191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현 빈부차이가 가장 심각하였다. 2012년 미국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1%의 인구에 총수입의 19.3%가 집중되였다. 미국의 10%에 달하는 가정이 전국적으로 50.4%에 해당하는 총수입을 통제하고있다. 이 수자는 1917년이래 가장 높은것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수입이 가장 높은 1%에 달하는 가정의 수입이 31.4% 늘어나 미국의 모든 수입장성률의 95%를 차지하였으며 저소득층은 0.4%밖에 늘어나지 못하였다.(주해 26을 볼것.)

2014년 미국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공민의 평균로임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회의 불평등이 심해지고있다고 밝혔다.

로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있다. 퓨연구쎈터가 2013년 4월 15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미국의 로조성원은 40만명 줄어들었다. 인디아나주와 위스콘신주 등에서 정부고용자들의 로조조직권리를 약화시켰다.

로조지도자는 로조성원들을 늘일수 있는 가장 큰 잠재력이 사영부문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미국로동통계

국의 자료에 의하면 사영부문에서는 6.6%의 직원들만이 로조에 참가하고있다. 2013년 7월 18일 데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를 신청하였다. 이것은 미국력사상 파산보호를 신청한 가장 큰 도시로 된다. 비록 미국의 주, 군, 시정부의 고용인련합회, 미국자동차로동련합로조, 퇴직자협회 등 로조조직이 이를 반대하였지만 련방파산재판소는 의연 데트로이트시가 미국의 《파산법》규정에 부합된다고 판결하였다. 로조와 퇴직자대표는 시정부의 파산신청은 로조 등 조직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현지 군중들은 격분하여 거리로 달려나와 항의시위를 벌렸다.(주해 27을 볼것.)

로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로동보수상황이 악화되고있다. 2013년 4월 18일 텍사스주의 한 화학비료공장에서 엄중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약 20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위험물질들이 루출되였다. 미국직업안정, 건강국은 오랜 기간 자금부족으로 1985년이래 이 화학비료공장에 대한 설비점검을 진행하지 못하였다.(주해 28을 볼것.)

2013년 2월 1일 《후핑톤 포스트》는 《미국농장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은 현대노예와 류사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농장로동자들의 도급로임이 30여년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매일 1명의 농장로동자가 작업과정에 사망하고 수백명이 부상당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농장로동자들

의 작업장에는 정부의 효과적인 감독관리가 부족하다.

미국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는 2013년 12월 5일 미국의 100여개 도시에 있는 속성음식점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이 큰 파업을 일으켰다고 보도하였다. 파업로동자들은 시간당 최저로임과 년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시간당 최저로임을 올려줄데 대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로스안젤스 타임스》는 2013년 11월 22일 2011년-2013년에 미국에서 집없는 사람이 16% 늘어났다고 보도하였다. 로스안젤스에서 집없는 사람들은 15% 늘어나 5만 7 737명에 달하였다. 미국의 집없는 사람들을 위한 련합이 2013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뉴욕에서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2002년이래 이미 71%이상 늘어났다. 뉴욕에서는 2만 2 000여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집없는 사람들의 수가 6만여명에 달한다.

사회보장문제가 엄중하다. 미국인구조사국이 2013년 9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미국에서 약 4 800만명이 의연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고있는바 그 수는 총인구의 15.4%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정부인체보험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수는 32.2%에서 32.6%로 조금 늘어났다. 2011년에 비해볼 때 인체보험을 향유하든 안하든 의료보건부문에서

사람들의 부담은 계속 커지고있다.(주해 29를 볼것.)

주정부련방조달정보쎈터는 2013년 미국정부《페쇄》의 영향을 받은 인민생활관련항목에는 《K-12》(주해 30을 볼것.)교육보조금항목과 빈곤자들에게 제공하는 저수입가정에네르기보조금항목, 녀성들과 갓난애기,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특수보충영양항목, 실업보험항목관리기금 그리고 어린이영양항목과 10월 1일이후에 시작된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주해 31을 볼것.)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미련방긴급구조항목은 2013년 12월 28일로 기한이 만료되였다. 미국회 상원이 항목의 연장여부를 제때에 결정하지 못한탓에 매주 실업보조금을 받는 약 130만명의 실업자들의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주해 32를 볼것.)

인종차별에 대하여

미국사회에 체계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인종차별로 하여 소수민족 후손들의 인권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법집행 및 사법분야에 소수민족 후손들에 대한 차별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다. 2012년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해에 적어도 136명의 적수공권의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 경찰과 보안성원들에 의해 살해되였다.(주해 33을 볼것.)

자동차사고발생후 방조를 요구한 24살의 흑인청년 죠나썬 파렐은 그 어떤 무기도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사살되였다.(주해 34를 볼것.)

25살 난 흑인처녀 디 게리쉬는 벌금을 물지 못한것으로 하여 2명의 백인경찰에게 체포되여 뭇매를 맞았다.(주해 35를 볼것.)

편견적인 거리차단 및 단속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미국의 지역법관은 뉴욕경찰국이 실시하고있는 거리차단에서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20만개나 된다고 판결하였다.(주해 36을 볼것.)

미국민권련맹이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대마를 피우는 흑인과 백인의 비률은 비슷하지만 흑인이 대마를 가지고 다닌것으로 하여 구류되는 가능성은 백인의 4배에 달한다. 그 주요원인은 사법계통에 소수민족 후손들에 대한 편견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는데 있다.(주해 37을 볼것.)

또한 자료에 의하면 백인녀성이 마약을 사용하는 비률이 소수민족 후손녀성들과 대체로 비슷하지만 마약판매죄로 감옥에 구류되는 녀성범죄자들중 3분의 2가 에스빠냐계와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다.(주해 38을 볼것.)

2013년 7월 흑인청년 트레보 돈 마틴을 사살한 백인경찰협조원 죠지 짐메르만이 무죄로 판결됨으로써 미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졌다.(주해 39를 볼것.)

미국인권지도자 제씨 잭슨은 이 사건은 《미국의 사법이 또다시 공정성을 잃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주해 40을 볼것.)

2013년 9월 3일 유엔인권리사회 아프리카인후예문제담당전문가그루빠와 인종주의문제담당 특별보고관은 미국정부가 마틴사건을 조속히 재조사하고 아프리카인후예들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이 존재할수 있는 법률을 심의할것을 요구하였다.(주해 41을 볼것.)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있다. 《로스안젤스 타임스》의 2013년 12월 2일 보도에 의하면 로스안젤스소방국에는 로동자들을 채용하거나 일상적인 작업과정에 인종 및 성별차별현상이 존재하고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로스안젤스소방국은 인종차별 및 이로 인한 소요사건에 대한 배상으로 도합 1 700만US$를 지불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데일리 뉴스》는 2013년 10월 26일 흑인영화명배우 로버트 브라운이 메씨백화점에서 어머니에게 선물할 1 350US$짜리 손목시계를 샀는데 상점측에서는 그가 흑인이므로 가짜신용카드를 사용한것으로 의심하였으며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1시간정도 구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후핑톤 포스트》웹싸이트는 2013년 10월 23일 흑인대학생 크리스틴이 바니백화점에서 350US$짜리 가죽혁띠를 샀는데 판매원은 협잡혐의로 의심하고 신고하였으며 그가 구매령수증과 신분증을 내보인 상황에서도 경찰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현지 경찰국에서 심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의 변호사는 《그의 유일한 죄행은 바로 그가 흑인청년이라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부 주요보도매체들과 사회조직 정객들이 인종주의언론을 내돌리고있다. 미국 ABC방송은 2013년 10월 16일 지미 키멜의 프로에서 《중국인들을 모조리 죽이자.》라는 주장을 류포하고 인종증오를 설교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인후예 특히 화교후예들의 불안과 항의를 야기시켰다.(주해 42를 볼것.)

미국의 주요 종교권익조직인 미국가족련합회는 《라틴아메리카계선거자들은 탐욕스럽고 게으른 사회주의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는 원인중의 하나이다.》라고 밝혔다.(주해 43을 볼것.)

콜로라도주 백인녀성 상원의원은 흑인들의 수명과 질병문제는 나쁜 습관과 음식으로 초래된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의 발언은 인종주의경향으로부터 온것이라고 간주되고있다.(주해 44를 볼것.)

원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크게 존재하고있다. 2013년 2월 13일 유엔인권리사회 원주민권리문제담당 특별보고관 안나야는 미국원주민녀성들이 폭력적인 침해를 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있다고 밝혔다.

9월 10일 그는 인디안어린이복리법의 실시가 저애를 받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정부가 인디안어린이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것을 호소하였다.(주해 45를 볼것.)

2013년 9월 10일 국제소수민족 후손권익조직은 미국자본에네르기회사의 벨리제지사가 현지 원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벨리제마야문화전통지역에서 원유탐사활동을 벌리고있다고 밝혔다.(주해 46을 볼것.)

(주해 23) 미국 퓨연구쎈터웹싸이트 2013년 11월 27일
(주해 24) 미국 CNN방송웹싸이트 2013년 11월 11일
(주해 25) 로이터통신웹싸이트 2013년 11월 6일
(주해 26) 《글로벌 포스트》웹싸이트 2013년 9월 10일
(주해 27)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12월 3일
(주해 28) 《후핑톤 포스트》웹싸이트 2013년 6월 4일
(주해 29) 미국 CNN방송웹싸이트 2013년 9월 17일
(주해 30) K—12: 유치원으로부터 12년간의 미국면비교육단계를 말함
(주해 31) 미국 퓨연구쎈터웹싸이트 2013년 9월 26일
(주해 32)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12월 27일

(주해 33) 유엔웹싸이트 2013년 9월 3일
(주해 34) 《뉴욕 데일리 뉴스》웹싸이트 2013년 9월 16일
(주해 35) 《데일리 포스트》웹싸이트 2013년 6월 4일
(주해 36)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8월 18일
(주해 37)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6월 24일
(주해 38) humaneexposures.com웹싸이트 2013년 12월 12일
(주해 39) 미국 ABC방송웹싸이트 2013년 7월 15일
(주해 40) 영국 BBC방송웹싸이트
(주해 41) 유엔웹싸이트 2013년 9월 3일
(주해 42) 《워싱톤 포스트》웹싸이트 2013년 11월 8일
(주해 43) 《로씨야의 소리방송》웹싸이트 2013년 3월 30일
(주해 44)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8월 22일
(주해 45) 제임스. 안나야웹싸이트 2013년 2월 13일
(주해 46) 미국 국제소수민족 후손권익조직웹싸이트 2013년 9월 10일

녀성 및 어린이권리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의연 엄중한 성별차별이 존재하며 어린이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있다.

녀성들은 엄중한 취직차별대우를 받고있다. 《로스안젤

스 타임스》가 2013년 12월 2일 보도한데 의하면 미국의 소방인원가운데서 녀성은 불과 3%를 차지한다. 이 비례는 1995년부터 늘지 않고있다.

녀성의 로임은 남성들보다 훨씬 적다. 미국로동통계국이 2013년 3월 2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전임사업을 하는 녀성들의 년급은 남성들의 81%에 불과하다.(주해 47을 볼것.)

미국로동통계국의 년간조사통계자료에 의하면 녀성의 년평균수입은 남성들보다 훨씬 적으며 아프리카계녀성의 로임은 남성의 69%, 라틴계녀성의 로임은 남성의 58%에 해당된다.(주해 48을 볼것.)

녀성과 어린이들은 항시적으로 폭력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2013년 녀성범죄혐의자가 강제로 옷을 벗기우고 수색당하여 소송하는 건수가 빈번하였다. 《시카고 트리뷴》이 2013년 10월 10일 보도한데 의하면 한 녀성범죄혐의자가 음주하고 차를 몰아 구속당한 후 머리를 깎이우고 구타당하였으며 남성경관으로부터 옷을 벗기우고 수색당하였을뿐아니라 얼굴부위의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가정폭력문제는 미국에서 의연 매우 심각하다. 가정폭력중지를 위한 미국전국네트워크는 201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2년 9월에 진행한 조사에 기초하여 하루동안에 6만 4 324명의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방조를 제공하였

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금부족으로 여전히 1만 471명의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제때에 효과적인 방조를 받지 못하고있다.(주해 49를 볼것.)

미국의 녀성군인들은 복무기간 항시적으로 성폭행과 성학대를 받고있다. 《아미 타임스》웹싸이트가 보도한데 의하면 2012년에 녀성군인의 6.1%가 성학대를 받았다.(주해 50을 볼것.) 2010년—2012년 미군부대에서 성학대와 성폭행을 당한 사건은 35% 늘어났다. 그중 피해자의 14%만이 유관기구에 보고하고 성침해자의 64%만이 군대에서 제대되였다.(주해 51을 볼것.)

어린이성학대와 성착취사건이 빈번하다. 《로스안젤스 타임스》웹싸이트가 2013년 7월 29일 전한데 의하면 2013년 7월 미련방수사국이 전국의 76개 도시에서 3일간의 특별행동을 벌려 매음조직자들의 수중에서 105명의 미성년을 구원하였다. 그중 절대다수는 처녀애들이며 제일 어린아이의 나이는 불과 13살이였다.

어린이들의 신변안전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시카고 트리뷴》이 2013년 11월 16일 보도한데 의하면 2012년 일리노이주에서만도 111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양육을 받지 못하여 가정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기록이래 그 수가 가장 많았다. 사망자들중 절대다수의 나이는 불과 1살이였다.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전해의 같은 시기에 비해 전국적으로 1 545명의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거나 양육을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었다.

《로스안젤스 타임스》가 2013년 12월 18일 보도한데 의하면 캘리포니아주 어린이보육체계 특히 개인이 맡아보는 보육기관에는 엄중한 어린이학대현상이 존재하고있다. 감시통제가 부족한 보육체계밑에서 일부 어린이학대경위가 있는 보육기관들은 계속 어린이들을 학대하고있다. 최근 5년간 시카고에서는 적어도 4명이 어린이보육기관에서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들은 종종 폭력범죄의 피해자로 되고있다. 《시카고 트리뷴》이 2013년 9월 15일에 보도한데 의하면 이해 여름 캘리포니아주의 주요병원들에서 총격당한 어린이들을 치료해준 사례는 주당 1건에 달하였다. 부상당한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미국은 어디에 가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부르짖고있다.

농업소년로동자가 수많이 존재하고있다. 미국전국직업안전 및 보건연구소가 2012년에 작성한 농업소년로동자들의 로동사고에 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6살미만 미성년농업로동자수는 4만 1 310명에 달하였다. 소년로동자보호운동의 한 책임자는 2012년에 미국의 농업소년로동자수는 약 40만~50만명에 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수많은

직종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치고있으며 농기계조작과 살충제분무와 같은 작업들은 치명적인 위협을 주고있다.(주해 52를 볼것.)

미국전국농업소년로동자건강 및 안전쎈터가 201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매일 38명의 어린이가 농업과 관련한 사고로 부상당하고있다. 2013년 3월 NPR방송은 특별프로에서 일리노이주에서 14살 난 어린이가 낟알창고에서 낟알에 파묻혀 목숨을 잃는 참사가 빚어졌다고 하면서 낟알창고에서 질식사고로 죽는 사망자의 20%가 모두 소년로동자들이라고 폭로하였다.(주해 53을 볼것.)

다른 나라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미국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엄중한 나라로서 《프리즘》사건과 무인기공습사건, 관따나모감옥, 세계적인 구금 등 사건들은 모두 국제사회의 호된 비난을 받고있다.

대규모적인 해외감시도청은 다른 나라의 주권과 공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있다. 미국가안전보장국 등 정보기관들은 장기간 다른 나라 수반들과 기타 지도자들, 외교기구와 민중을 감시도청하고있다.

스노우덴이 공개한 기밀문건에 의하면 미국가안전보장

국은 35개 나라 지도자들의 전화를 도청하고있다.(주해 54를 볼것.)

미국가안전보장국은 또한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세계적인 범위에서 손전화활동정보를 추적, 절취하여 매일 50억건의 정보를 수집하고있다.(주해 55를 볼것.)

2013년 4월 유엔인권리사회 언론자유문제담당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 뤼는 유엔인권리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국정보감시통제에 관한 수정안법》을 고쳐 해외에서 미국인이 아닌 인사들을 감시통제할수 있는 미국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주해 56을 볼것.)

9월 9일 유엔의 한 인권전문가는 유엔인권리사회 제24차 회의에서 미국의 안전감시체계가 개인의 비밀과 기타 인권에 주는 영향에 대해 다시금 우려를 표시하였다.(주해 57을 볼것.)

미국의 세계적인 감시 및 도청행위에 대처하여 제68차 유엔총회는 《디지털시대의 개인비밀보장권리》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결의는 비법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감시통제하고 통신을 절취하며 개인자료를 비법적으로 수집하는것은 개인비밀보장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하였다. 일부 나라들은 결의채택에 앞서 한 발언에서 미국은 개인비밀보장권리 등 기본인권을 침해하고있을뿐아니라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내정불간섭 등을 존중할

데 관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도 위반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주해 58을 볼것.)

무인기를 빈번히 리용하여 다른 나라의 많은 민간인사상자를 초래하고있다. 영국의 비영리조직인 신문조사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이래 미국은 이미 파키스탄에서 376차례의 무인기공습을 단행하여 926명의 민간인사망자를 초래하였다.(주해 59를 볼것.)

2013년 5월 9일 파키스탄 페샤와르고급법원은 파키스탄에서의 미국무인기의 비법적인 공습은 국가주권을 침범하고 기본인권과 제네바공약의 유관규정을 공공연히 유린하는 행위라고 판결하였다.(주해 60을 볼것.)

2013년 12월 12일 미국무인기가 예멘의 한 혼례식자동차행렬을 공격하여 2명의 부락장로를 포함하여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당하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그가운데는 테로분자로 의심되는 혐의자가 없었다.(주해 61을 볼것.)

같은 해 10월 유엔인권리사회 반테로, 인권문제담당 특별보고관 벤 에머슨은 미국이 무인기항목을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주해 62를 볼것.)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유엔인권리사회 법외사형처리문제담당 특별보고관과 반테로, 인권문제담당 특별보고관은 무장공격무인기가 민간인사상자를 초래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론의하였다.

유엔과 유관정부기구들이 공습리유와 기준, 민간인사상자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 등을 설명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전부 거절하였다.(주해 63을 볼것.)

다른 나라들과 지역들에서 가혹한 행위를 계속하고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리사회의 반테로, 인권문제담당 특별보고관 벤 에머슨은 자기의 보고서에서 미중앙정보국이 일부 나라들에 비밀구류장소를 내오고 테로범죄협의자들을 구금하는데 리용하고있으며 죄수들을 비밀리에 이송하는 이른바 《특수인도》행동을 취하고있다고 밝혔다.

비록 미중앙정보국의 비법적인 행위들이 광범한 비난을 받고있지만 오늘까지도 미국의 그 어느 관리도 이로 인해 책임을 추궁받은적이 없다.(주해 64를 볼것.)

미국의 이 계획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협의자들을 비밀리에 세계 각지의 비밀감옥들에 옮겨 심문하거나 고문하는것이다.(주해 65를 볼것.)

보도에 의하면 적어도 136명이 비공식적으로 인도되거나 구류되여있다.(주해 66을 볼것.)

관따나모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의 권리가 엄중히 침해되고있다. 이 감옥의 수감자들은 대다수가 재판을 받지 않고 무기한 갇혀있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웹싸이트는 2013년 10월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기한 구류는 명백히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주해 67을 볼것.)

2013년 2월부터 관따나모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단식하는것으로 무기한 구류와 렬악한 대우에 항의하였는데 단식참가자수는 92명에 달하였다.(주해 68을 볼것.)

미군부는 강제급식의 방법으로 단식자들을 대하고있는데 강제급식은 매일 두차례 진행된다. 단식자들을 의자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해군 의료성원이 코구멍에 도관을 밀어넣고 강제급식시킨다.(주해 69를 볼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이러한 강제급식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하는것이라고 재천명하였다.(주해 70을 볼것.)

2013년 10월 3일 유엔인권리사회 악형문제담당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는 관따나모감옥의 무기한 구류와 단독구금, 강제급식 등 행위들은 악형행위에 속하는것으로서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주해 71을 볼것.)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2013년 5월 유엔인권리사회 제23차회의에서 미국의 관따나모감옥은 반테로과정에 인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있는 전형적인 실례라고 비난하였다.(주해 72를 볼것.)

발전도상나라들의 생존권과 발전권이 부정당하고있다. 2013년 10월 29일 제68차 유엔총회에서는 꾸바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에 대한 미국의 엄중한 침범을 비난한 《꾸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상업, 금융봉쇄를 반드시 끝장

녈데 관한 결의》가 22번째로 압도적인 다수로 채택되였다. 188개 나라가 이 결의채택에 찬성하고 3개 나라가 기권하였으며 미국 등 2개 나라만이 반대하였다.(주해 73을 볼것.)

미국은 광범한 발전도상나라들이 관심하는 발전권에 대해 랭담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2013년 9월 유엔인권리사회 제24차회의는 발전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는데 오직 미국만이 이를 반대하였다.(주해 74를 볼것.)

(주해 47) 미국로동통계국웹싸이트 2013년 10월
(주해 48) www.nationalpartnershipforwomen&families.org웹싸이트 2013년 9월 17일
(주해 49) www.nnedv.org웹싸이트
(주해 50) 《아미 타임스》웹싸이트 2013년 5월 7일
(주해 51) 《애어포스 타임스》웹싸이트 2013년 7월 23일
(주해 52) 《유에스에이 투데이》웹싸이트 2013년 10월 25일
(주해 53) 소년로동자고용중지웹싸이트 2013년 3월 19일
(주해 54) 영국 《타임스》웹싸이트 2013년 10월 25일
(주해 55) 《타임》웹싸이트 2013년 12월 4일
(주해 56) 유엔문건 A/HRC/23/40
(주해 57)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웹싸이트 2013년 9월 9일

(주해 58) 유엔웹싸이트 2013년 12월 9일
(주해 59) 로이터통신웹싸이트 2013년 10월 22일
(주해 60) 열린사회단체기금웹싸이트 2013년 10월 22일
(주해 61) CNN방송웹싸이트 2013년 12월 13일
(주해 62) 유엔웹싸이트 2013년 10월 31일
(주해 63) 유엔웹싸이트 2013년 10월 31일
(주해 64) 유엔문건 A/HRC/22/52
(주해 65) 영국 《모닝 스타》웹싸이트 2013년 2월 5일
(주해 66) 열린사회단체기금웹싸이트 2013년 2월 5일
(주해 67) 유엔웹싸이트 2013년 10월 3일
(주해 68)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웹싸이트 2013년 10월 3일
(주해 69) UPI통신웹싸이트 2013년 4월 24일
(주해 70) www.commondreams.org웹싸이트 2013년 5월 1일
(주해 71)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웹싸이트 2013년 10월 3일
(주해 7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웹싸이트 2013년 10월 3일
(주해 7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웹싸이트 2013년 10월 29일
(주해 74) 유엔문건 A/68/53/Add.1

인권말살제국—미국

편 집 신 광 혁
장 정 김 윤 일
교 정 정 윤 우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3(2014)년 12월 29일
발 행 주체103(2014)년 12월 31일

ㄱ—1241ㄷ